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5권중 1권

2003. 12.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4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변경과정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제2장 자율사업	
제3장 공공사업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5장 보칙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주요골자	30
3. 주요 변경사항	34
4. 해설	38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145호)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143호)	109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7
VI. 기타주요사항	249

참고 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참고 2. 고품질쌀 관련 정의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258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260
2. 토양개량사업(자율)	313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323
4. 발기반정비(공공)	333
5. 농지기반조성(공공)	362
① 경지정리사업 ②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 배수개선(공공)	411
7. 수리시설개보수(공공)	435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② 저수지 준설사업	
③ 방조제개보수 ④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8. 농촌용수개발(공공)	480
① 대·중·소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9.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522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자원관리	
③ 농업용수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0. 농지조성(공공)	569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11. 지역특화사업(공공)	603
II. 농업기계화	626
12. 농기계구입지원(자율)	628
13.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689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III. 생산 및 유통개선	714
14.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율)	716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742
15.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자율)	744
①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② 마늘경쟁력 제고지원	
II. 사육기반확충	824
16. 사료사업 지원(자율)	826
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② 사료사업지원	
17.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자율)	862
18.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889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19. 한우사업지원(공공)	911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③ 품질고급화 장려금	
20. 가축개량사업(공공)	944
III.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996
21.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998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22.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1069
①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 지원	
③ 인삼계열화사업	
2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자율)	1107
24.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자율)	1149
25. 농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161
①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②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26.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공공)	1184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직거래매취)	
③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시설지원	
27.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1212
① 농산물 자조금 조성 ② 축산 자조금 조성	
28.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1225
①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②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29.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1239
30.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1243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	
31. 우수농산물 지원(공공)	1282
①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운영	
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1296
32.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1298
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 지원 ② 축산물가공시설운영자금 지원	
③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④ 축산물등급판정 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33. 축산물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1379
① 가축질병 근절대책 ② 축산물검사	
③ 가축방역 ④ 가축공제	
34.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420
35. 축산업등록지원사업(공공)	1428

제4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 개선	1435
36. 친환경농업육성(자율)	1437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②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37.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1483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97
38.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1499
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 ③ 농촌 PC보내기 지원	
④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운영 ⑤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⑥ 마을단위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 ⑦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선정·활용	
39. 농림기술개발(공공)	1598

40. 농촌활력화*(공공)	1607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	
41. 기술보급*(공공)	1621
① 새기술보급시범 ② 품목별전문교육	
③ 4-H회원시범영농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III. 인력육성	1653
42. 후계농업인육성(기술)	1655
① 창업농지원사업 ②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3. 농업인 자녀 지원(공공)	1714
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②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③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 ④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44.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744
IV. 소득보전	1779
45.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1781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③ 논농업직접지불제 ④ 쌀생산조정제	
46. 농작물 재해보험사업(공공)	1893
47. 농가도우미지원(공공)	1902
V. 소득원개발	1913
48.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915
①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②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49.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1973
50.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1986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② 농업인 경영희생 지원	
51. 농공단지육성(공공)	2003

VI. 생활환경개선	2021
52.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공공)	2023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가주거환경개선*	
53.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2085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2113
54.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2115
① 산림경영장비지원 ② 임업기계지원센터설치	
55. 영림계획(자율)	2124
56. 사유림협업경영(공공)	2129
57.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2133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II. 생산 및 유통개선	2143
58. 임산소득증대(자율)	2145
① 단기임산물생산 기반조성 ② 조정수·분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④ 산림종합자금제도	
59. 목재이용·가공 및 국산재활용 지원(자율)	2195
① 목재이용·가공지원 ② 국산재활용 지원	
60. 산림조합육성(공공)	2213
61.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217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목재유통지원	
③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III. 인력육성	2261
62.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자율)	2263
63.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2369
① 임업전문인력육성 ② 임업기술지도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2279
64.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산림박물관 등 조성(공공)	2281
① 산림휴양공간조성 ②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③ 생태숲 조성	
65. 산촌개발(공공)	2295
V. 산림자원조성	2303
66. 해외조림사업(자율)	2305
67. 산림자원조성(공공)	2311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보호수 정비 ③ 산지목재비축 지원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여 백

1. 배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2.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조역량 제고
-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내기관은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들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들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와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 농업인들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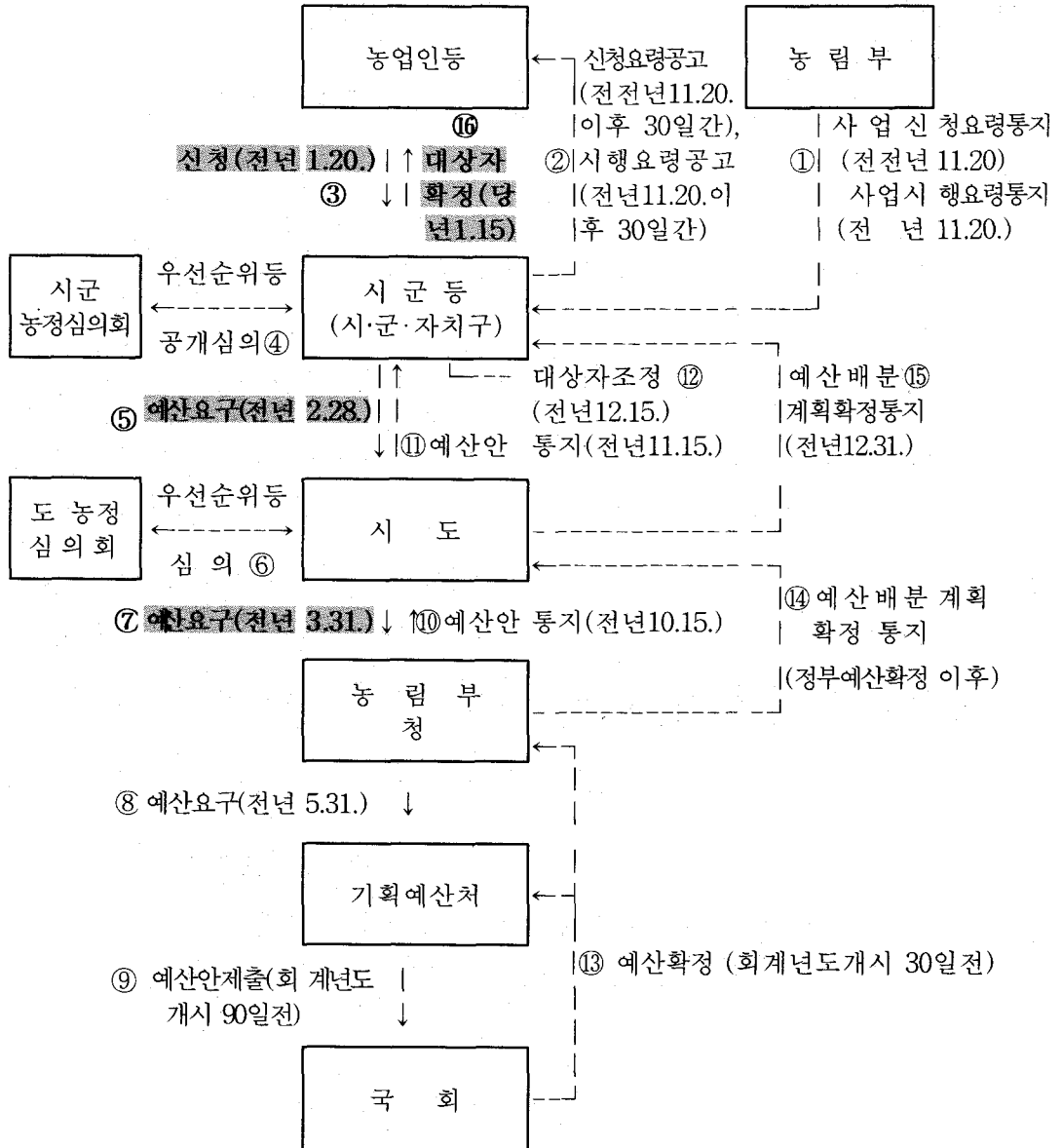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① 유사사업의 통 폐 합	○ 87개(자율 18, 공공 69)	○ 74개(자율21, 공공53)	○ 70개(자율23, 공공47)	○ 69개(자율25, 공공44)	○ 67개(자율25, 공공42)
② 경 영 장 부 (경영일지) 기록 의무 이행 강화	- 미기록 또는 현저히 기록을 소홀히 한자 에게는 순위 부여하지 않 는다는 자구 삭제	-	-	-	-
③ 경 영 교 육 이수 강화		-	-	-	-
④ 사업신청에 탄 력 성 부 여	○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게 송부 - 사업예정 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심의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추가사업 신청기간은 사업추진 가능 여부, 예산지 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수시 신청토록 예외 인정	-	-	-

사 항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⑤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본 규정에 명시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지원요건을 구비하고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법인이 선정(제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환자 정착촌인의 분뇨처리 시설사업은 법인설립후 신청가능 	-	-	-
⑥ 사후관리 책임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이상인 사업장은 농림부, 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 비치 - 담당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한 후 의견 기재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인·삼협 임직원이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제39조제6항) 	-	-	-	-
⑦ 사업안내표 지판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사업에서 장뇌삼 등 약용작물은 도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 	-
⑧ 고품질쌀생 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쌀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논에 타작물 재배규제완화 	-	-

4. 해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제2조제1호)
- (2) **자율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 (3) **공공사업** :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또는 정부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제2조제3호)
-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부 : 투자심사담당관실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 『해석기관』이 이에 해당됨

나. 적용범위 등(제3조)

(1)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함**(제3조)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 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2) 농림사업분류표의 내용(제3조제2항 별표1)

○ 대분류(4개)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농촌개발,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중분류(10개)

- 공통(8개) : 생산(사육, 경영)기반확충, 농업기계화, 생산(원예, 축산물) 및 유통개선, 기술개발 및 정보화, 인력육성, 소득보전,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 특별(2개) : 산림복지 기능증진, 산림자원조성

○ 소분류(단위사업<67개>) : 자율사업 25개, 공공사업 42개

[설명] 정부예산과목의 “세항”(기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한 그보다 범위를 넓게 설정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3조의2)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3조의2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시행요령에 열거되지 않은 세부사업내용이라도 정부시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청가능함을 명기함

[설명]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통상적으로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기 전에 사업예정년도에 적용할 농림사업 분류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에 통지함(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전년도 8. 31.까지)

※ 시행지침서에서 사용되고있는 고품질 쌀(벼)은 매년 농촌진흥청장이 미질, 식미평가를 통해 선발 추천하는 품종으로서 ①질소비료 감축 재배, 적온건조 및 적정가공 등에 의해 생산된 쌀(벼), ②동청장이 추천하는 품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쌀(벼)

③동청장이 추천하는 품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품질인증을 받은 벼(쌀), ④모양, 색깔 등 기타사항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품질 쌀(벼)이라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고품질 쌀관련 유권해석 기관은 식량생산국 농산경영과임)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5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5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4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 제4권 : 농촌개발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 농림사업 안내기관(제8조제1항)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 기반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다만, 읍면동의 경우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정한 업무 분담내용에 따름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함(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 (제3조의2제7항)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제4조 내지 제4조의6)

(1) 구성(19인이내)(제4조)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공보관·감사관·농업정보통계관 포함), 청의 기획관리관,

(2) 기능(제4조의3)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사업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회의(제4조의4) :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경우는 2,4,7,9월의 마지막주중 각1회에 한함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1월내에서 연기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기
 - 2, 4월은 예산요구 일정 감안
 - 7, 9월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및 당년도 사업시행여건 변화에 대처

[설 명]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소집을 제한한 것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엄격하게 적용

(4)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제4조의6)

- 구성(15인이내)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국장급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소속의 주무과장,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제2장 자율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및 제8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요령 등을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문의 형식은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함)(제7조)

○ 공고할 사항(제7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제7조제2항)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함(제7조제3항)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다만, 읍면동의 경우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정한 업무분담내용에 따름(제8조제1항)

○ 안내기관의 장은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내 및 상담에 응함(신청자격 및 절차, 사업계획 작성, 신청자의 기술수준 등, 인·허가 사항,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제8조제2항)

나. 자율사업의 신청절차(제9조 및 제10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이를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해야 함(제9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9조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2) 다음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9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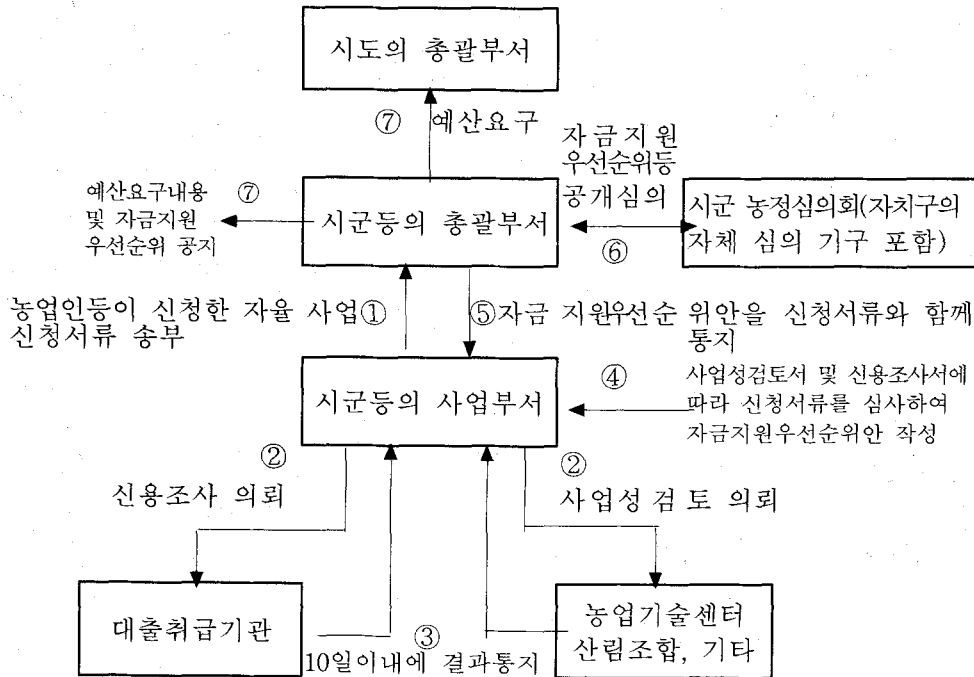
- 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 : 2천만원
- 기타사업 : 3천만원

(3) 신청기한(제10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 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1조 내지 제16조)



< 업무단계별 설명 >

- ② 사업성검토(제1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및 제2항)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다만, 읍면동의 경우는 해당 시장군수등이 정한 업무분담내용에 따름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된 사업(산림청 소관)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② 신용조사(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
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④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농협·산림조합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 구성·운영(제14조)**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14조제3항)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서 경영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14조제4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14조제5항)

⑥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제15조)

- 시군 농정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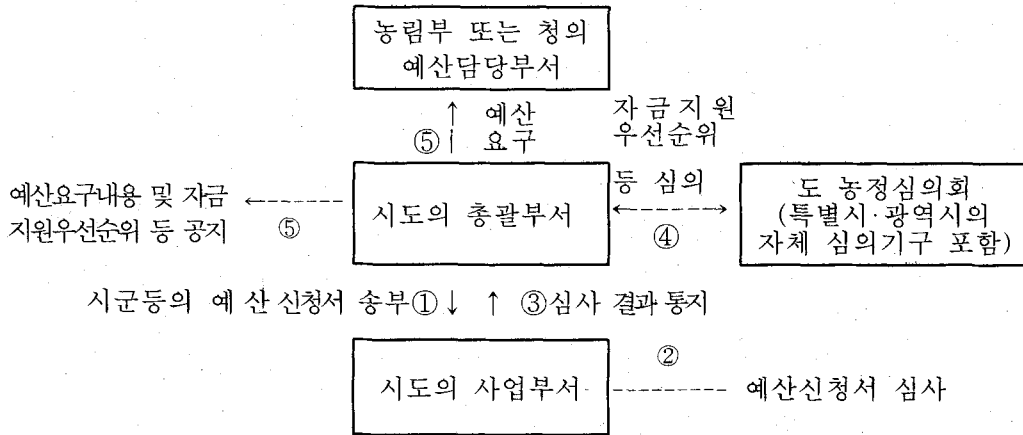
- 시군 농정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 (생산자단체장 5인, 농림어업인 대표 8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갈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정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17조제3항)
-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16조)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 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7조)



<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18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18조제1항)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19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19조제1항)
-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19조제2항)
- (3) 시장군수등은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1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 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20조 내지 제23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20조)

[설명] 정부예산 확정기한 : 정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2일이 법정시한임. 그러나 국회사정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1조)
- (3) 시군등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 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22조, 제23조)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 사유>

-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24조)

- (1)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하여야 함(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 (2) 위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2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제3장 공공사업

가. 공공사업의 신청(제25조)

(1)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용자대행기관에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사업부서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일)까지 신청(제25조제1항·제2항, 제4항)

- 용자대행기관 : 농협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용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제25조제1항)
- 용자대행기관이 직접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같음함(제25조제1항)
- 공공사업 신청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효과의 확산 방안, 사업준비상태, 사업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제25조제2항)

(2)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용자대행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함(제25조제3항)

[설명] 사업시행지를 관할하는 시군등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당해 시군등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나. 공공사업의 예산반영(제26조)

- (1)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읍자대행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자율사업의 절차 준용)를 거쳐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한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1항)
- (2)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공공사업의 예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율사업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확정하고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2항)
- (3)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에 반영함(국고는 기획예산처에 요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제26조제3항)
<검토할 사항 : 제2장-마-(2) 참조>

다. 정부예산안의 통지,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의 확정 등 절차는 자율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함(제28조)

- 사업신청 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제8조)
- 신청서식(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신청서 심사 및 예산요구 절차(제11조 내지 제18조)
- 정부예산안 통지 및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19조 내지 제21조)
-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공지(제22조, 제23조)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29조)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경제성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 여부
 - 기대효과 등
-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29조제3항)
-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4항)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0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시행 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선정을 요구함(제30조제1항)
 -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요구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0조제2항)

다. 신규사업의 선정(제31조)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4조의4 제2항)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함(제31조제1항)

○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31조제3항)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31조제4항)

[설명] 이때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32조)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신청서 제출(제9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11조 내지 제13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14조)

○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제15조)

제5장 보칙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다만 읍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읍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음(제39조제1항)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서기관, 사무관)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한 후 의견을 기재토록 함(제39조제2항)
 - 지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9조제3항)
-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9조제4항 별표2)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함(제39조제5항)
-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협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39조제6항)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0조)
 - [설명] * '94-'96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97. 1-2월중에 농협의 경영평가 보고서 및 동 기간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영농 준비교육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고
 - * 앞으로도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41조 별표 3)

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해설

여 백

1. 배 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융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 '98. 7. 23. 주요개정사항 >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장

<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 '99. 11. 8. 주요개정사항 >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 '02.11.20. 주요개정사항 >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년도 1. 10. → 1. 20.)

< '03.11.10. 주요개정사항 >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2. 주요골자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를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를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금융기관거래자료중 하나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에 의하여 사업검정실시

라.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용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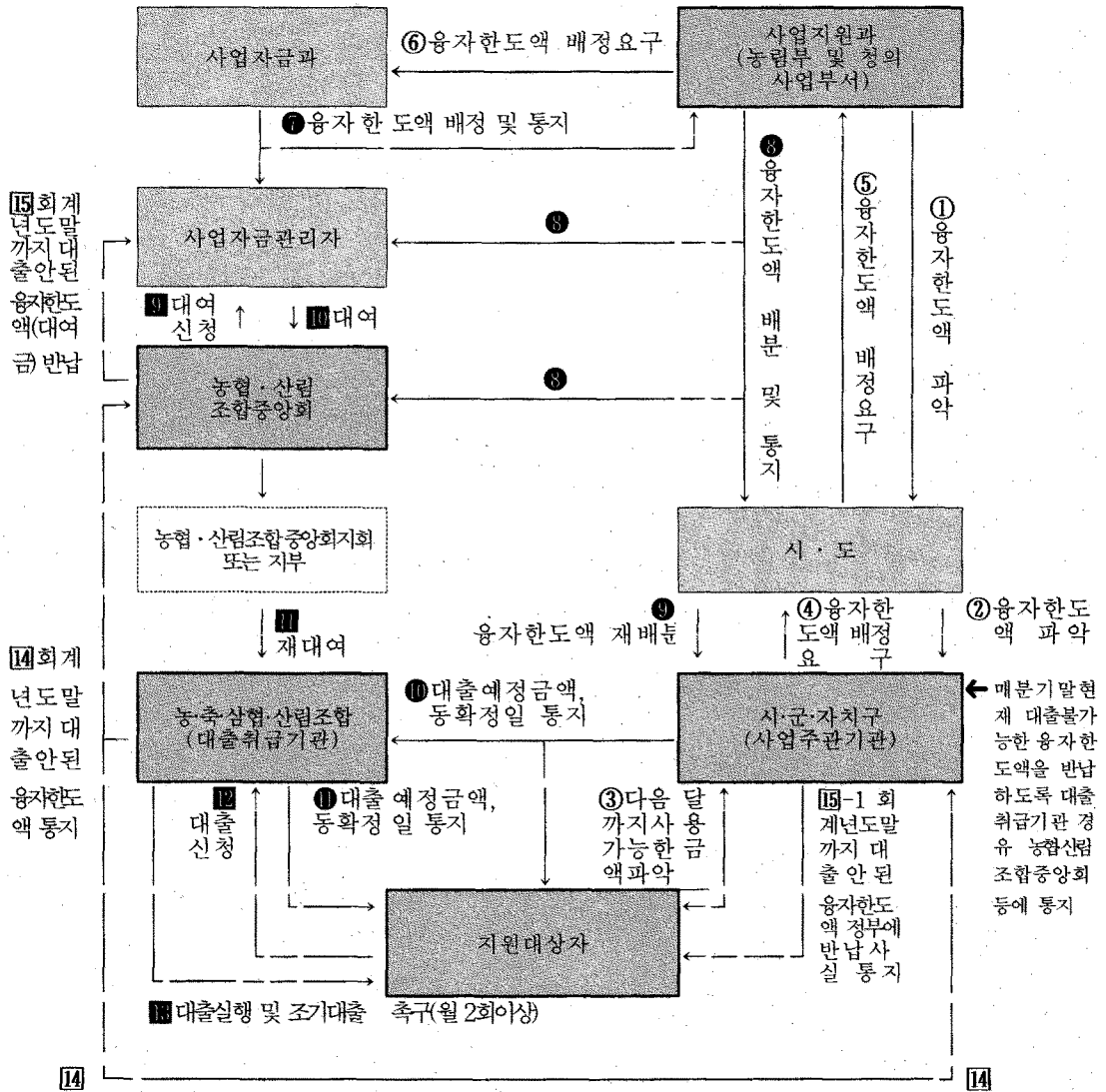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 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삼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용자 절차도



(주) ○ 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축·산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용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 ⑧은 훈령의 제1호서식, ⑨는 제2호서식, ⑩은 제3호서식, ⑭는 제5호서식, ⑮-1은 제6호서식에 의함
- ⑧의 통지가 없으면 ⑨의 대여신청과 ⑩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9.11.7.이전	'99. 11.8.~'02.11.19.	'02.11.20.~'03.11.10.	'03.11.11.이후
①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제4조제6항)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②완료사업의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제4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농산물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좌와 같음)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 제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③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 11.8.~'02.11.19.	'02.11.20.~'03.11.10.	'03.11.11.이후
④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 『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 대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 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 대출 원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 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⑦ 용자금예산의이월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역금은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 연장가능(제10조제1항) ○ 사업지원과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가능(제10조제2항) ○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년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 조치를 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 11.8.~'02.11.19.	'02.11.20.~'03.11.10.	'03.11.11.이후
⑧ 대출 기한 래 전에 대출 불 가능 한 자 도 의 액 반 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 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 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 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 ○ 반납이자(제8조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⑨ 대출 기한	○ 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 대출 기한 이 경 과 한 자 용 자 한 도 의 액 반 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2호) 	(좌와 같음)	○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 1.20.일까지 반납(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제10조제3항)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 11.8.~'02.11.19.	'02.11.20.~'03.11.10.	'03.11.11.이후
⑪ 여신관리계좌 운용	○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 받아야함(제12조제1항)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⑫ 여신관리계좌 입금액 중 미지급액 등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 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⑬ 부당사유 대출금의 회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⑭ 지원실적의 공개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사군구 및 농축안-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4. 해 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 (2) **지원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함

(3) **지원** :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예] 농특회계(용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용자업무 : 협동조합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협동조합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용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농업기반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용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안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구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을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안된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서명한 영수증 등으로 가능하도록 인정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 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 하는 사례방지

-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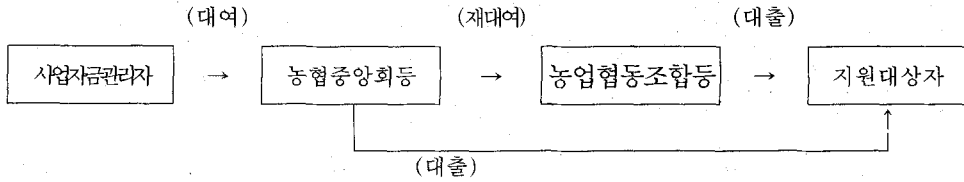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융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용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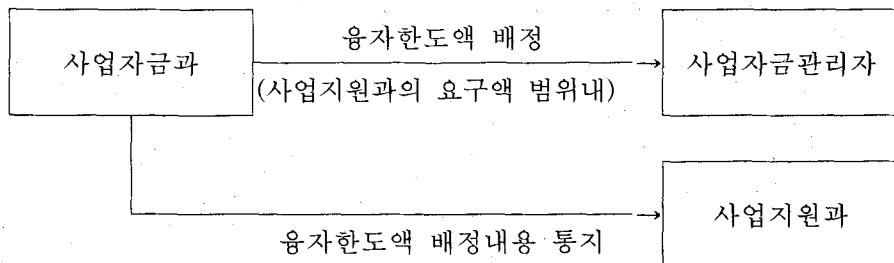
(3)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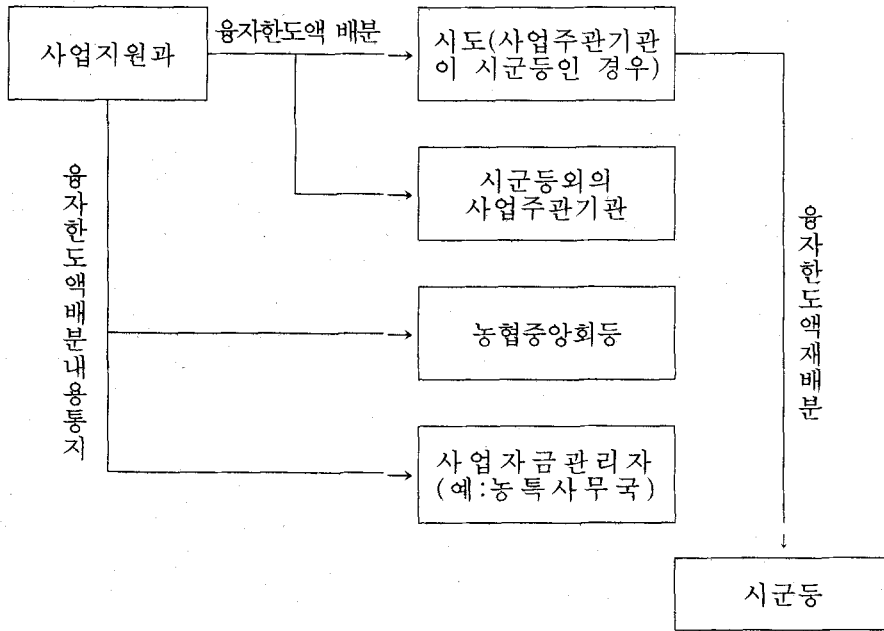
(4) 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용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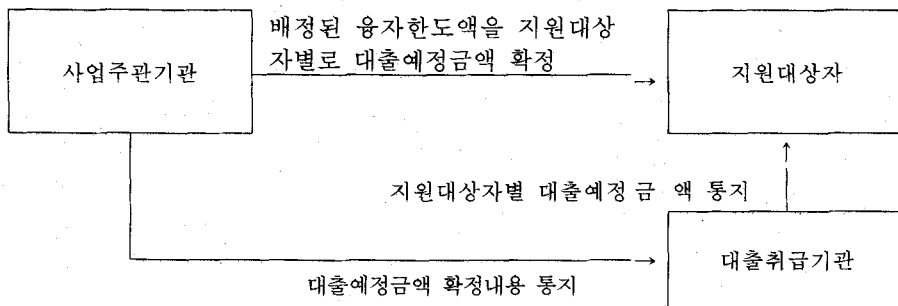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용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용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 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 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실 명]

- 종전에는 용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3)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용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 『용자종결기한』 제도를 두어 용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용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용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확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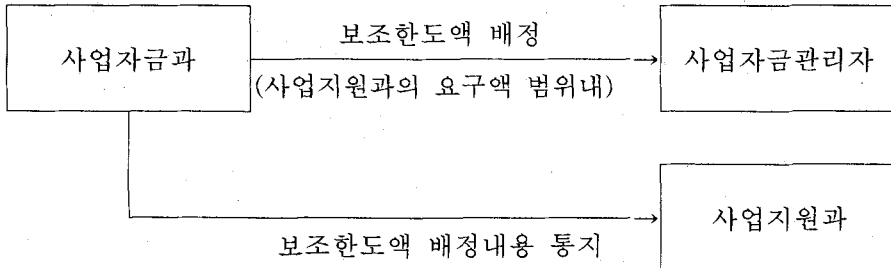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제2항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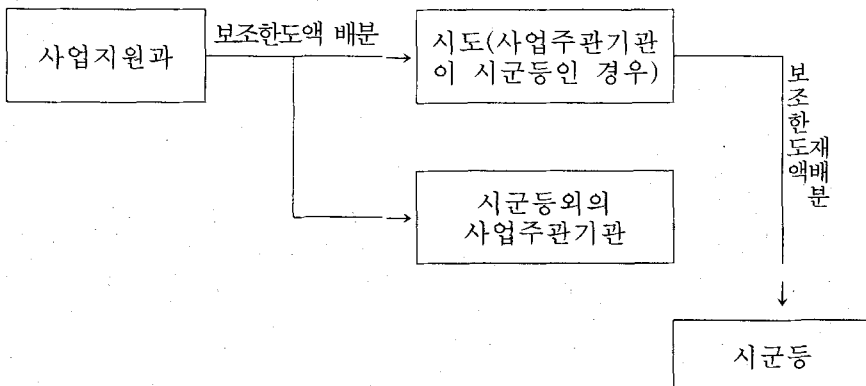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 · 사업지원과 · 농협중앙회등 · 대출취급기관 · 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때	5년 (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 미만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파. 보칙(제18조)

-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Ⅲ. 농림사업실시규정

(훈령 제1145호)

여 백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선정과 실시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시행 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이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0. 28, 2002. 11. 29>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7. 10. 29.>
 -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2002. 11. 29>
 -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농림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2002. 11. 29>
 - 다.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신설 1997. 10. 29.>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의 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7. 10. 29.>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1999. 11. 16>

② 농림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이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한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개정 1997. 10. 29.>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의2 (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에는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 요령과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안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정하기 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3. 9, 1999. 11. 16 >

③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및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농업정보통계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1998. 3. 29>

2. 청의 기획관리관

3. <삭제 1999. 11. 16>

4. <삭제 1999. 11. 16>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2.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안건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제2호의 위원을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 3. 9, 2000. 11. 27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을 위한 경우는 2월, 4월, 7월, 9월의 마지막 주중 각 1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집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5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된다.<개정 1996. 10. 28.>

제4조의6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을 두되,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국장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의 과의 장과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1998. 3. 9, 1999. 11. 16>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제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5조 <삭제 1996. 10. 28.>

제6조 <삭제 1996. 10. 28.>

제2장 자율사업 <개정 1996. 10. 28.>

제7조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자연마을의 게시관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개정 1999. 11. 16, 2000. 11. 27, 2003. 11. 17.>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8조 (자율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기관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 12, 1999. 11. 16, 2002. 11. 29>

다만, 읍면동의 경우는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이하“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분담내용에 따른다.<신설 2003.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자율사업의 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수준, 노동력, 토지 및 생산시설과 후계농업인의 자격요건<개정 2002. 11. 29>
4.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부담 능력
5.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6.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7. 생산자단체등의 구성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 예상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1.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9조 (자율사업의 신청 등) ① 자율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읍·면동장과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 등의 총괄부서가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2, 1999. 11. 16, 2003.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한다.)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0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자율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전 절차)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개정 1999. 11. 16>
2.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개정 2000. 11. 27>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신설 1997. 10. 29.>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별로 금액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전문개정 1996. 10. 28.]

제12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전문개정 1996. 10. 28]

다만, 읍면동의 경우는 해당 시장군수등이 정한 업무분담내용에 따른다.

<신설 2003. 11. 17>

제13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6. 10. 28 2000. 11. 27>

제14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작성 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심사하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심사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자율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을 확인하여, 성실하게 기록한 신청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성실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 12.>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서 경영정보를 제공한 신청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개정 2003. 11. 17>

⑤ 시·군 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8. 11.12.>

⑥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전문개정 1996. 10. 28.]

제15조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 등) ① 시군 농정심의회는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한다.<개정 1997. 10. 29, 1998. 11. 12, 1999. 11. 16.>

② 시군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 11. 16>

③ 시군 농정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개정 1999. 11. 16, 2002. 11.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16>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이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구의 홍보지 또는 반사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1.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④ 도 농정심의회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1999. 11. 16>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어야 한다.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1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1. 16>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1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 계획안을 수립하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개정 1997. 10. 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개정 2002. 11. 29.>

제2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제9조제4항에 정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스스로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2.>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최저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장 공공사업 <개정 1996. 10. 28.>

제25조 (공공사업의 신청) ①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이하 “용자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10조에 정한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용자대행기관이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사업효과의 확산방안·사업준비상태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용자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동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신청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6조 (공공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예산 반영)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총괄부서가 시군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③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총괄부서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에 반영(국고의 경우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8. 3. 9, 2002. 11.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7조 <삭제 1997. 10. 29.>

제28조 (준용규정) 제7조, 제8조(제2항제7호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공공사업에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중 “후계농업인의 자격요건”은 “경영능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제6호중 “선도농가”는 “우수사업자”로 하고, 제11조중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준용규정중 “자율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은 “제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1996. 10. 28, 1997. 10. 29, 2002. 11. 2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개정 1996. 10. 28.>

제29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농림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경제성
4. 농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개정 2002. 11. 29>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대효과
7.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개정 2002. 11. 29>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0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1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그 사업시행지침을 포함한다.)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확정한다. <개정 1997. 10. 29. 2000.11. 27.>

②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정보완치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7.>

[전문개정 1996. 10. 28.]

제32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월이내에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5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제33조 < 삭제 1996. 10. 28. >

제34조 < 삭제 1996. 10. 28. >

제5장 보 칙 <개정 1996. 10. 28.>

제35조 < 삭제 1996. 10. 28. >

제36조 < 삭제 1996. 10. 28. >

제37조 < 삭제 1996. 10. 28. >

제38조 < 삭제 1996. 10. 28. >

제39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용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분기별 1회이상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1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은 지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⑥ 농림사업의 계획·집행·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개정 2000.11. 27.>

제40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제41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 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 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 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 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 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사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합 계(67)		(25)	(42)
2.농업(식량작물) 구조개선(14)	가.생산기반확충(11)	(5)	(9)
		(2)	(9)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주요농작물원원중및원중생산 밭기반정비 농지기반조성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지조성 지역특화사업
	나.농업기계화(2)	(2)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표는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임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3농업(원예·축산) 구조개선(21)	다.생산및유통개선(1)	(1)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7)	(14)
	가. 생산기반확충(1)	(1) 고품질우량종자개발	
	나.사육기반확충(5)	(2) 사료사업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 축산가축계열화사업 한우사업지원 가축개량사업
	다. 원예 생산 및 유통 개선(11)	(4)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자금 지원	(7)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유통시설지원 농수산물소비자유통 기반확충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라. 축산물 생산및유통 개선(4)		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 채소수급안정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 농산물수출진흥사업 우수농산물지원 (4)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 학교우유급식사업 축산업등록지원사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4.농촌개발(18)	가.생산및유통개선(2)	(7)	(11)	
		(2)		
	나.기술개발 및 정보화(4)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종합자금지원		
		(1)	(3)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농림기술개발	
	다.인력육성(3)			농촌활력화*
		(1)	(2)	
		후계농업인육성		기술보급*
				농업인자녀지원
	라.소득보전(3)			농업경영건설팅지원
			(3)	
			농업직접지불제	
마.소득원개발(4)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3)	(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농가 도우미 지원		
	한계농지정비사업			
	농가경영안정지원			
		농공단지육성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5.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14)	마. 생활환경개선(2)		(2)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6)	(8)
	가. 경영기반확충(4)	(2)	(2)
		산림경영장비지원 영림계획	사유림협업경영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나. 생산및유통개선(4)	(2)	(2)
		임산소득증대 목재이용·가공및국산재활용 지원	산림조합육성 임산물유통개선지원
	다. 인력육성(2)	(1)	(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	임업전문인력양성및임업 기술지도
라. 산림복지 기능증진(2)		(2) 산림휴양공간조성및산림 박물관 등 조성	
마. 산림자원조성(2)	(1)	(1)	
	해외조림사업	산림자원조성	

[별표2 : 제39조제4항 관련]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
80
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개정 2002. 11. 29>

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법인

나.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 법인에 한함)

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에 한함)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당해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예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한우 고기 전문판매점 등)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나환자촌안의 영농조합법인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법인설립후)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신설 2002. 11. 29>

2. 사업별 지원요건<개정 2002. 11. 29>

o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할 수 없음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마.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차.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 양, 가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단,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용평가는 시·군 농협(농업분야), 축협(축산분야)에서 실시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의2제1항 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요령

- 별도의 지침지시없이도 농업인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단위사업의 순서를 대분류별, 중분류별로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의 순서로 적음 (예)

1	○○○○○○사업 (자율)
---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일련 번호	단 위 사 업 명 ()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 (과장 ○○○, 사무관 ○○○)입니다. [0 0 청]

1. 목적

2. 시책 및 추진방향

- * “6-바”에서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시책방향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재

3. 근거법령(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의 관련조항을 법령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4. 연도별 지원계획

구분	'92-년	년	년	년 (예산안)	년	년이후
사업량						
사 계	백만원					
업 비 비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년도 사업시행요령(○○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지원시설의 종류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반개조식으로 기재

나. ○○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 용자조건 : 연리 %, 년거치후 년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 신규사업의 경우 이 지침 시행후 새로이 신청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6의 가 내지 바”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그외의 경우는 < >항목자체를 삭제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을 기재)

나. 사업담당부서(과단위까지 기재하고 농림부 및 청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병행기재)

- 농림부(또는 ○○청) :
- 시도 :
- 시군자치구 :

다. 자금지원예정자(자율사업의 예와 같이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이어서 기재할 수 없거나 확정전에 발표하여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사업비 집행방법,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기재
- * 대규모 지원시설 또는 첨단시설의 경우 시공자 자격기준, 시설설계, 계약절차, 공사감리, 준공검사 및 대금집행 방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 등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에 관한 서식, 사업비에 포함하는 비목의 범위, 검정 및 정산 사무처리절차, 기타 세부 필요사항을 상세하게 기재(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3항 내지 제8항 참조)
-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기재

바. 기타사항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운영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체계 기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정하되 가능한한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조치 (별지제7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개정 2002. 11. 29>

나. 보고·기타

* 보고서식은 사무관리규정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수시보고의 심사를 받은 것에 한하며, 서식 위좌측 여백에 지정 또는 심사를 받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개정 2003. 11. 17>

6. ○○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년도는 사업예정 년도의 다음년도를 말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명]

나. 신청자격

- * 농업인등의 선호가 높아 신청경쟁이 치열하여 탈락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자격요건 강화조건을 반드시 기재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맞도록 명시

○ 우선순위

- *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이 따로 정하는 전문경영체에 대하여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반면,
- * 전문 경영체외의 생산자단체 등에게는 농업인등 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 선정절차

- * 대형사업 및 첨단시설 설치사업등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표준경영진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사업성 검토내용 기재

바. 기타사항

-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의2제3항 관련]

2000년도
농 립 사 업 시 행 지 칙 서
[각권별 제목]

총5권중 제0권

2000. 00. 00.

농 립 부

< 작성요령 >

○ 구성 : 총5권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편성

- 각권의 첫장에 일러두기를 기재(권별 수록내용, 문의기관 등)
- 각권내용의 차례(目次)를 전체권 공통순서로 하여 특정권만으로도 다른권에 수록된 내용목록을 알 수 있도록 함
- 각권의 쪽번호는 제1권부터 시작하여 제5권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함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 등 의 명 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호 () 번호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내 용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용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p>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p> <p style="margin-left: 40px;">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 style="margin-left: 40px;">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 별 시 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프링클러 :					(톤)			
	공 동 시 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²	개 소 (톤)	식	대 (톤)	m ²			
<p>(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p> <p>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 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 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기 타 시 설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립)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제4항 관련]

대출 신청 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예정치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명칭		생산자단체등의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규모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장 (인)

275-007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3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2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증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목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적용대상자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8호서식 : 제2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여 백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1143호)

여 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제정]

개정 1996. 8. 8. 훈령 제 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 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1143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2002.11.20>

3. “지원”이라 함은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 (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1998. 3. 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 10. 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1999.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용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2003. 9. 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98. 7. 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2002.11.20.>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1998. 7. 23, 개정 2003. 11. 10.>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 11. 10.>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 7. 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1. 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7조 (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000. 11. 13>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 10. 29, 1999. 11. 8, 2000. 11. 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 10. 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 11. 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7. 23.>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 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9, 1998. 7. 23, 1999. 11. 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20>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 10. 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 10. 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6. 8. 8, 1997. 10. 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1997. 10. 29, 1998. 3. 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 7. 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 7. 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 7. 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 7. 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1999. 11. 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 7. 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 7. 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 7. 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 7. 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 7. 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 7. 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 7. 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 10. 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 10. 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 8. 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연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 . 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 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9.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1. 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발신 : ○○시도

접수 확인 일 19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피확 인자	○○시·군·자치구 ○○과	·	·
	·	·	·
	·	·	·

1. 사업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19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19		
6. 시·도 의 재 배 분 일	19		미 배 정 : ④ 천원
7. 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㉑ 합계 : ㉑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발신 : 사업주관기관

Table with columns: 접수 확인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Includes details for '사업주관기관 ○○과' and '○○조합 ○○부서'.

Main application form with sections for 1. 사업명, 2. 연간예산액, 3. 사업資金課의 배정일, 4. 사업資金課의 배정액, 5. 사업支援課의 배분일, 6. 시도의 재 배 분 일, 7. 대출예정금액 확정 일, 8.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㉑

합계 : ㉑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19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군·자치구○○과	○○○○
피확 인자	○○조합 ○○부서	.	.
	.	.	.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 금의 융자 한도 액 배 정 일	사업자 금의 융자 한도 액 배 분 일	사·도 용의 자 한 도 액 배 분 일	대출예 정금액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사 업		김 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3.	사업포기
○○○ ○○사 업		김 개 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날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

접수확인 (19...)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조합 ○○부서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발신 : 대출취급기관

1. 사업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19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만)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액	19		미 배 정 : ④ 천원
6. 시 도 의 재 배 분 액	19		
7. 대출예정금액 확정액	19		미 배 정 : ④ 천원
8.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⑥			합계 : ⑥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p>1900. 00. 00.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된 바 있는 0000 사업의 융자한도액 00,000,000천원중 00,000,000천원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p>					

여 백

V. 농림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여 백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1. 영농규모화사업</p> <p>○ 신청자격 · 절차 · 구비서류</p>	<p>나. 지원대상자 농지매매 지원대상</p> <p>○ 영농복귀자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농지의 매입신청자</p> <p>○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환지 대상자</p> <p>농지 장기임대차 지원 대상</p> <p>○ 영농복귀자</p> <p>② 농지가격 현지조사시 반드시 농지관리위원,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거래가격 확인</p> <p><사업시행요령></p> <p>가. 일반농지매매사업</p> <p>(마)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p> <p>② 공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p> <p>㉞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p> <p>㉟ 잔 금 :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p>	<p>나. 지원대상자 농지매매 지원대상</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 농지가격 현지조사시 반드시 농지관리위원,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 부터 실거래가격 확인</p> <p>(마)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방법</p> <p>② 공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 지급방법에 의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농지(이하 "일반농지"라함)에 대하여는 매입 대금을 일시불지급, 경영 이양직접지불사업과 연계된 농지 (이하 "경영이양농지"라함)는 선금 지급 후 잔금을 균등분할 지급</p>	<p>개요의 주요 골자를 명시하고 나머지는 지침 세부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p> <p>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 역할 축소로 이장 추가</p> <p>경영이양직불사업과 연계된 농지의 경우 분할지급 방법을 도입함에 따라 지급방법 규정</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신 설)	<p>③분할지급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대금은 선금 지급후 농가선택 지급유형에 따라 잔금을 매월 균등 분할지급. ○ 지급기간 : 약정을 체결 하고 최초 원리금을 지급한 달이 속하는 해부터 만 70세가 되는 해의 해당 달 기간까지 지급 ○ 지급이자 : 잔금에 대하여 5% 확정금리를 적용 ○ 지급일자 : 농지대금 분할지급시에는 농지 대금 잔금을 지급약정 채결후부터 매월 25일 예금계좌로 입금지급. ○ 분할지급중 수령자 사망시 지급방법 -농지대금 잔금은 상속인 에게 일시불로 지급 	<p>분할지급 도입에 따라 지급방법 명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신 설)</p> <p>2)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가) 지원대상자</p> <p>(신 설)</p>	<p>○지급유형 -선지급금 : 매매대금의 30% 또는 50% -잔금 : 매매대금의 70% 또는 50% 균등분할 지급</p> <p>(바)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지급보증</p> <p>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영이양농지를 농지 매매대금 지급완료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의 사장이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매매대금(원리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함</p> <p>②매매대금 지급보증 서식 : 별지 제1호서식</p> <p>2)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p> <p>③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및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만55세 이하이며 논 경영규모가 2.0ha 이상인자. 다만,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규취농농업인, 후계농업인이 있는 농업인 및 50세미만인 자는 논경영규모 2.0ha미만인 자도 지원가능</p>	<p>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 유형 제시</p> <p>잔금지급 완료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른 지급보증 관계 명시</p> <p>보증서식 규정</p> <p>경 영 이 양 직 불 사업 개편에 따라 양 수 농 가 의 조건을 명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나) 지원제외자</p> <p>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기 보유 농지를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 규모를 축소한 자</p> <p>④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61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61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가능(이 경우에는 신청시 영농승계확인서 징구)</p>	<p>④ 일반농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및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기준 만60세 이하인 자</p> <p>(나) 지원제외자</p> <p>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기보유 농지를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 등에 의해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p> <p>④ 경영이양농지지원시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56세 이상, 일 반 농지 지원시에는 만 61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이 경우에는 영농승계 확인서 징구하여 후계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p>	<p>-매도,임대외에 증여, 분가등 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발생 방지</p> <p>경 영 이 양 농 지 및 일반농지 지원 제외자중 후계 농업인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내용 명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3. 선정기준·우선 순위·절차</p>	<p>(다) 농지매입신청 (지원대상자→공사) ※ 공사의 지사장은 지역 영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되, 1차 지원신청은 2.15까지 신청되도록 하고, 적기지원, 대상 농지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신청도 접수(농지 지원에 한함)</p> <p>(라) 지원대상자 선정 ①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 설)</p> <p>㉗ 2.0ha이상 5.0ha미만 인 자로서 1회 최소 지원으로 소유 농지를 포함한 전체 경영 규모가 3ha이상 또는 5ha 이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자</p> <p>㉘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 농업인의 농지매입 희망자 또는 공사를 통한 임대차사업 참여자</p> <p>③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별표1</p>	<p>(다) 농지매입신청 (지원대상자→공사) <삭 제></p> <p>(라) 지원대상자 선정 ①</p> <p>㉗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p> <p>㉘ 2.0ha이상인 자로서 1회 최소 지원으로 소유농지를 포함한 전체 경영규모가 3ha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자</p> <p>㉘ 공사를 통한 임대차 사업 참여자</p> <p>③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별표1 내용개정</p>	<p>수시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p> <p>영농규모화사업 과연계된 경영이양직불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 조정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의 경영규모에 탄력성 부여</p> <p>지원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p> <p>현실성 있는 평가 항목 및 배점운영</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④공사지사장은.....지원 순위를 정하여 관할 시·군과 협의 하여야함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일반농가도 포함하여 순위부여)</p> <p>○ 신청기간 종료후 1월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 하되, 신청기간외신청 자는 수시로 관할시·군과 협의한후 선정</p> <p>※협의절차는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 위원회 심의 절차로 같음할 수 있음</p> <p>(마) 적정 지원한도 결정</p> <p>①기존소유규모를 포함</p> <p>㉗쌀전업농육성대상자 : 10ha.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5ha</p> <p>㉘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 20ha</p> <p>(1) 대상농지 확보</p> <p>(라)농지임대신청(농지 소유자→공사) 서식 : 별 지 제 3호 서 식 (신청시기는 매매 사업과 같음 : 농지 임대에 한함)</p>	<p>④공사지사장은.....지원 순위를 정하여 공사영농 규모화사업추진위원회 에서 심의선정하여야함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외의 일반농가도 포함 하여 순위부여)</p> <p><삭 제></p> <p><삭 제></p> <p>(마) 적정 지원한도 결정</p> <p>①기존 소유규모 포함 내용을 삭제하여 지원 한도 확대</p> <p>(1) 대상농지 확보</p> <p>(라)농지임대신청(농지 소유자→공사) 서식 : 별지제4호서식</p> <p><삭 제></p>	<p>자체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로 대체하여 사업 추진의 활성화 도모</p> <p>자체심의로 대체 함에 따라 불필 요한 조항 삭제</p> <p>지원한도를 확대 하여 쌀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 촉진</p> <p>수시신청이 가능 토록하여 농업인의 편의도모 및 사업 활성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4. 기 타</p>	<p>(2) 지원대상자 및 지원 한도 (나) 지원제외자 ①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65세이상인 농업인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영농 기반을승계할 농업 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가능 (다) (임대차)지원한도 기존 경영규모를 포함하여 ①쌀전업농육성대상자 : 20ha ②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 40ha</p> <p>(3) 계약체결및임차료납부 (나) 임대차료의결정 ②임대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 정하되... (라) 임대차료 지급 및 납부 ①공사는...농지소유자 에게 임차료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 ②공사로부터...농지소 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p> <p><행정사항> (1)기본방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통해 3ha이상 및 5ha이상 농가출현을 촉진 - 2003년도 지원농가의 80%이상인 3ha이상 규모농가가 되도록 일정규모이상 농가 집중 지원</p>	<p>2) 지원대상자 및 지원 한도 (나) 지원제외자 ①..... (경영주체의 청장년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연령 점차 인하) (다) (임대차)지원한도 기존 임차규모를 포함하여 ①쌀전업농육성대상자 : 20ha ②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 40ha</p> <p>②임대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매년 재결정하되... ①공사는...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되 일정 비율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 다음연도부터 계약 기간동안 매년 분할지급 ②공사로부터...농지소유 자에게 선지급한 임차 료 금액을 균등분할하 여 해당기간동안 매년 납부하고 분할지급 해 당 임차료 금액은 당 해연도에 재결정된 임 차료 에 따라 납부</p> <p><행정사항> (1)기본방침 ○2.0ha이상 5.0ha이하 규모농가에 자금을 집중지원하여 지역별· 개인별목표 규모확대 달성 ○2004년도 지원사업비의 70%이상을 2 - 5ha 규모 농가에 집중 지원</p>	<p>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연령인하 내용 사전에 명시 하여 농업인의 혼선방지</p> <p>임대차사업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쌀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촉진</p> <p>임대차료 분할 지급에 따른 내용 규정</p> <p>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 도록 완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②쌀전업농육성대상자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유 논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하여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면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p> <p>㉡공사 지원농지를 매도 또는 증여하여 경영 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이내에 확대 하지 않은 경우 취소</p> <p>(라) 자격승계 ① ㉢당해년도 1월1일기준 만56세 이상으로서 농업 후계인력에 계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취소사유>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으로서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전업농으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판단 하는 경우</p> <p>(1)사후관리상황조사 (가)공사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농지의 매매 (구입자금포함), 임대차 및 교환·분합 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조사</p>	<p>②쌀전업농육성대상자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유 논 (공사 지원농지 포함)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하여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영농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p> <p>㉡공사 지원농지를 전매 등의 행위제한 특약 사항에 반하여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 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이내 소유자 명의 원상회복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p> <p>(라) 자격승계 ① ㉢당해년도 1월1일 기준 만56세 이상으로서 농업 후계인력에 계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취소사유>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규모화된 법인체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p> <p>(1)사후관리상황조사 (가)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조사</p>	<p>경영규모 축소 개념 재정립</p> <p>전매제한 특약 사항 위반시 제재 조항 명확화</p> <p>경영이양 직불 사업 개편에 따라 조정</p> <p>상반기에 사후 관리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여 사후관리 내실화 도모</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2)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가)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다만, 임대 및 위탁영양은 농지법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p> <p>㉞'95년이전 일반전업 농에게 지원된 8년 특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p> <p>⑤각종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으로 직접영농을 할 수 없어 그 임기 동안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p> <p>(1)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관간 협조 ○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농지 관리위원 등으로 구성 하되, 지자체 및 농업 기술센터 관계자는 반드시 포함</p>	<p>(2)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가) <단서조항 삭제></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삭 제></p> <p>⑤농지법 제9조 및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p> <p>(1)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관간 협조 ○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 관계자, 쌀 전업농단체 임원과 공사직원등으로 구성</p>	<p>단서조항 내용이 현행지침 제⑤항 과 중복되므로 삭제</p> <p>기간경료로 부적합한 조항 삭제</p> <p>(가)항의 단서 삭제 내용 명시</p> <p>추진위원회 구성원 개선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도모</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4)업무지침운영·기타 (다)2002.12.31이전 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 제한과 분할납부기간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p> <p>(2)사후관리 상황보고 (나)공사는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 조사 결과를 8월31까지 장관에게 보고 ○ 2004년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 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에 제출</p>	<p>(4)업무지침운영·기타 (다)2003.12.31이전 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제한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 다만 2004년도에 지원받기 위하여 2003년도에 신청한 자는 2004년도 지침을 적용</p> <p>(2)사후관리 상황보고 (나)공사는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 조사 결과를 10월31까지 장관에게 보고 ○ 2004년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에 제출</p>	<p>자구수정</p> <p>사후관리 내실화 도모</p> <p>수시신청이 가능 토록 완화</p>
2. 토양개량사업			
사업명	토양개량사업	토양개량사업	토양개량제
	① 토양개량제 공급	① 삭제	공급사업만
	② 객토	② 삭제	추진
			- 객토사업은 『농업종합사업 금지원』사업으로 추진
각 항목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
	읍·면	읍·면·동	시의 경우 문
			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함
5. <사업체계> 바,			
(4) 토양개량제의 살포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 농협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수해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 등에 인력을 지원토록 함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 농협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수해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함	지역농협 및 수해농업인의 역할을 명확히 함
	신청내역 : 석회	신청내역 : 석회	패화석 추가
별지 4호 서식	계 : 석회고토, 소석회	계 : 석회고토, 소석회,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패화석	
신청서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3. 주요농작물원원중 및원종생산</p> <p>4. 기타</p>	<p>- 사업비 반환(동법 제30조, 제31조)</p> <p>· 사업비 정산결과 정산 잔액 등은 반환</p> <p>※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무의 위임)</p> <p><신 설></p> <p>가. 사후관리</p> <p>○ 채종단계별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p> <p>- 포장검사 : 벼, 맥류 등은 1회, 감자, 옥수수 2회</p> <p>- 합동진단 : 작물별 1회</p> <p>※ 농림사업 평가계획에 의거 분기별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지원실적 등을 종합 평가</p>	<p>- 사업비 반환(동법 제30조, 제31조)</p> <p>· 사업비 정산결과 정산 잔액 등은 반환</p> <p>※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무의 위임)</p> <p>· 반환기한 : 익년 6. 30.</p> <p>가. 사후관리</p> <p>○ 채종단계별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p> <p>- 포장검사 : 벼, 맥류 등은 1회, 감자, 옥수수 2회</p> <p>- 합동진단 : 작물별 1회</p> <p>○ 농림사업 평가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지원실적 등을 종합평가(익년1월)</p>	<p>보조금의 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반환기한명시</p> <p>평가시기를 명확히 규정</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4. 발기반정비</p> <p>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p> <p><사업계획수립·시행> (4)경작로 정비</p> <p>(5) 밭경지정리</p> <p>[별표1] 차등보조율적용 대상 지자체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도 동일적용</p>	<p>○ 농기계 통행 등 밭작물 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신 설)</p> <p>○ 정지계획수립시에는 유기질 토양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계획하며, 무리한 정지계획은 지양 (신 설)</p> <p>○ 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 8개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p>	<p>○</p> <p>○</p> <p>○</p> <p>-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 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p> <p>- 지방도 등 상위도로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경작로 공종은 제외</p> <p>○</p> <p>○</p> <p>○</p> <p>-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의 최소화를 위해 경사면 안정화, 유출방지 둔덕 설치 등 친환경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p> <p>○ 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 현행(2003)과 같음</p>	<p>○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 도로(확·포장) 가 연계될 경 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 하여 도로개 설 효과를 배 가할 수 있도 록 계획</p> <p>○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환경부주관) 의 일환으로 밭에 대한 토양 침식 및 토사 유출 저감 기능 강화</p> <p>○ '03년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기초 자치단체 선정 결과에 따름</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5.농지기반조성</p> <p>①경지정리사업</p> <p>2.시책 및 추진방향</p>	<p>○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p> <p>- 33개 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1) : 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7) : 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장수 · 전남(13): 곡성,구례,장흥,강진,신안,보성,함평,완도,고흥,진도,해남,무안,담양 · 경북(7) : 의성,영양,봉화,청송,예천,군위,상주 · 경남(4) : 산청,함양,의령,합천 <p>○일반경지정리는 논면적 1,146천ha중 800천ha를 목표로 추진</p> <p>- 생략</p> <p>- 2003가을착수이후부터는 농업진흥지역내 잔여 대상중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30ha이상 우량농지 위주로 우선 추진하고, 10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p>	<p>○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p> <p>- 33개 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2) : 보은,괴산 · 충남(1) : 청양 · 전북(6) : 진안,임실,순창,고창,부안,장수 · 전남(12): 곡성,구례,장흥,강진,신안,보성,함평,고흥,진도,해남,무안,담양 · 경북(7) : 의성,영양,봉화,청송,예천,군위,상주 · 경남(5) : 산청,함양,의령,합천,남해 <p>○일반경지정리는 논면적 1,138천ha중 720천ha를 목표로 추진</p> <p>- 좌동</p> <p>- 2004가을 착수부터는 5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p>	<p>○ '01-'03기간 중의 지방재정력 지수와 농지면적, 농업인구 등을 감안한 농업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초자치단체별 차등지수 산정 결과에 따름</p> <p>○쌀산업여건변화 등을 감안 '04부터 일반경지정리사업착수 중단 및 대구획 경지정리 추진 방향 재정립 ('03대상지 정비결과 반영)</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②기계화경작로확포장 5. 2004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대상지구선정> 나. 우선순위</p>	<p>○대구획경지정리는 과거에 경지정리된 지역중 기반정비가 미흡한 200천ha 및 일반경지정리대상중 100ha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대하여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2003가을착수이후부터는 '70년대이전에 경지정리 되어 필지규모·농로가 협소, 용·배수로 겸용등 영농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천ha 및 일반 경지정리 대상중 10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를 우선하여 추진 <p>※대구획경지정리 잔여 지역 100천ha는 2단계로 추진</p> <p>○생략 (신 설)</p>	<p>○대구획경지정리는 보전 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이나 논구획 협소,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한 164천ha 계획목표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2004가을착수 부터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이나 필지규모 및 농로 협소, 용·배수로 겸용등 영농여건이 열악한 73천ha를 중심으로 추진 <p>○생략</p> <p>○간척농지개발사업지구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100ha이상)</p>	<p>○우선순위지구에 우량농지인 간척사업지구 포함</p> <p>※ '0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사업시행> 다. 세부설계 및 시행 계획 수립</p> <p>라.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p>	<p>(6) 생략 ○ 지구별 완공위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되, 대규모 평야지구는 2~3년차로 사업시행하여 완료토록 계획수립 (신 설)</p> <p>(2)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신 설)</p> <p>(3)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신 설)</p>	<p>(6) ○ 좌동</p> <p>※ 한 사업지구에 대해 설계·계약시공준공 등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가급적 없도록 하여야 함</p> <p>(2) 좌 동</p> <p>○ 기본계획 준수여부(기본 조사시행여부, 노선변경 여부 등)</p> <p>(3) 좌 동</p> <p>※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분할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p>	<p>○ 행정력낭비 해소 ※ '03년 감사 원 감사 지적 사항 반영</p> <p>○ 사업효율성 제고 ※ '03년 감사 원 감사 지적 사항 반영</p> <p>○ 예산절감 ※ '03년 감사 원 감사 지적 사항 반영</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7. 수리시설개보수</p> <p>1. 목 적</p> <p>2. 시책 및 추진방향</p> <p>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p> <p>①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개요> (1)사업내용</p> <p><사업추진> (1)사업대상지구선정</p> <p>(3)예정지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p> <p>(나)기본계획수립</p> <p>④저수지비상대처 지원</p>	<p>○생략 (신 설)</p> <p>○생략 (신 설)</p> <p>○생략 (신 설)</p> <p>○생략 (신 설)</p> <p>○생략 (신 설)</p> <p>○생략 (신 설)</p> <p>○생략 (신 설)</p> <p>(신 설)</p>	<p>○생략</p> <p>○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 보강으로 재해대비 능력 강화</p> <p>○수리시설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계측시스템 설치 등</p> <p>○생략</p> <p>○저수지 및 배수장 시설 보강</p> <p>○생략</p> <p>○재해대비 보강 - 저수지, 배수장 시설보강 및 자동수위계 설치 등</p> <p>○생략</p> <p>○재해대비보강 - 정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p> <p>○생략</p> <p>○재해대비보강 - 기본계획수립,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p> <p>○저수지비상대처수립에 관한사항</p>	<p>○재해대비보강 계획 관련 신설</p> <p>○안전진단분야 추가</p> <p>○재해대비보강 계획 관련 신설</p> <p>○재해대비보강 계획 관련 신설</p> <p>○재해대비보강 계획 관련 신설</p> <p>○재해대비보강 계획 관련 신설</p> <p>○'04년신규사업</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8.농촌용수개발 ①대중소규모용수개발 다.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p> <p>②지표수보강개발 (3)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p>	<p>(1) 시·도지사는 예정지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 (매년 3월말까지)</p> <p>단,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필요시 시·도지사가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p> <p>(나) 예정지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50ha 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자체비용으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0ha 이상 지구는 농림부에서 기본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p>	<p>(1) 시·도지사는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 (매년 3월말까지)</p> <p>다만, 시·도지사는 소규모 (50ha미 만) 용수개발사업중 필요한 경우나 시설안전성이 요구되는 저수지계획 지구에 대해 가급적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p> <p>(나) 예정지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 수혜 면적 50ha 이상 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p> <p>○다만, 시 · 도지사는 50ha 미만 지구 중 필요한 경우나 시설 안전성이 요구되는 저수지 계획 지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p>	<p>○ 기본조사대상 강화로 시설물 안전성 제고 도모</p> <p>○ 농어촌정비법에 부합되게 수정</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다) 50ha미만지구의 기본 조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용역업체(이하 조사설계전문기관이라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삭 제>	
<p>(8) 용지매수 및 보상</p> <p>9.농업생산기반정비</p> <p>②지하수자원관리</p> <p>10.농지조성</p> <p>①대단위농업종합개발</p> <p>5.2004년도사업시행요령</p>	<p>(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p> <p>다. 용지 매수 보상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p> <p>(4)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 계획 수립</p>	<p>(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과-----</p> <p>다. 용지 매수 보상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과 --</p> <p>(4)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 계획 수립</p>	<p>○ 관련 법률 명 개정사항 반영</p> <p>○ 관련법률 개정 사항 반영</p> <p>○ 총사업비관리 지침 반영</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다.사업시행	(다)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다)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세부 설계를 완료한 후 기획예산처 총사업 비관리 지침에 의한 조달청의 선심 절차를 거쳐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 도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9)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	(가)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관련법률명 개정사항 반영
(11) 검사 (다)준공검사	② 농림부장관은 주요 공종을 확인한 후 년도말 검정액을 확정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 증명 발급은 농림부의 주요공종 발체확인이 끝난 경우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체확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 공사완공증명을 발급함	② 농림부장관은 주요 공종을 발체 확인한 후 년도말 검정액을 확정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 증명 발급은 농림부에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체확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검정내용을 명확히 함 ○실제 진행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②서남해안간척 5.2004년사업시행요령</p>	<p>(신 설)</p>	<p>사. 총사업비 관리 (1)토목사업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건축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업시행과정에서 위 금액기준에 해당할 경우의 사업도 포함 (2)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결과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3)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사업시행계획변경전에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조정 등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p>	<p>○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 지침내용 반영</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11. 지역특화사업</p> <p><사업개요></p> <p>○지원사업</p> <p>○예산내역</p>	<p>○시상사업</p> <p>- 추천사업</p> <p>· 2개분야 7개 세부사업(10개 단위사업)</p> <p>-추천이외사업</p> <p>· 농림부와 사전협의 후 추진</p> <p>○공모사업</p> <p>-농림부 공모 사업선정심의회위원회에서 선정</p> <p>○소규모농업기반정비</p> <p>○특성화품목개발</p>	<p>○시상사업</p> <p>-지역특화품목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p> <p>-지역특화품목과 지역의 부존자원(자연자원, 전통문화자원 등)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색사업</p> <p>-재해방지대책 및 친환경농업 관련사업 등</p> <p>-행사성·경상적 경비, 공산품생산시설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제외</p> <p>○공모사업</p> <p>- (좌동)</p> <p><삭 제></p>	<p>○시상사업 추진대상을 기존의 소규모통합사업(추천사업)에서 탈피하여 전략품목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p> <p>-농촌지역활력증진을 위한 특색사업도 지원가능하도록 함</p> <p>○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율성 확대</p> <p>-추천사업 메뉴 및 지원기준 폐지</p> <p>-추천이외사업의 농림부 사전협의 제도 폐지 단, 특화품목에 미포함된 사업 등에 지원시는 농림부와 협의</p> <p>○'04지역특화사업 예산(안) 편성시 예산내역을 별도 구분하지 않음</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예산배정	<p>○시상사업</p> <p>-지자체 농림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에 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공모사업</p> <p>-사업신청</p> <p>· 시군→시도 : 전년도 11월30일</p> <p>· 시도→농림부 : 당해연도 1월15일</p>	<p>○시상사업</p> <p>-지자체 농림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도에 배정</p> <p>*광역시는 '05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p> <p>-예산배정</p> <p>· '04년은 경지면적, 농가 호수, 그동안 지자체 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배정</p> <p>· '05이후는 전년도 지자체 평가결과를 기초로 배정</p> <p>○공모사업</p> <p>-사업신청</p> <p>· 시군→시도 : 전년도 9월30일</p> <p>· 시도→농림부 : 전년도 10월30일</p>	<p>○광역시는 농림업무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을 감안하여 '05년부터 시상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p> <p>*광역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p> <p>-예산을 조기 배정(전년 12월말이전)하므로써 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 도모</p> <p>*현행 시상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연도초(4월)에 배정</p> <p>○사전 사업준비 철저 및 사업조기확정</p> <p>· 시행으로 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추진체계> ○특화품목지정</p>	<p>(신 설)</p>	<p>○도지사가 농업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품목 지정</p> <p>-전체농경지면적중에서 특정품목의 생산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많은 품목(특화계수 1.1이상)</p> <p>-특정 브랜드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p> <p>-전문기술(특히, 신지식농업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품목</p> <p>-지방자치단체의 전략품목 육성 의지와 생산 조정 등에 의한 과잉생산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함</p> <p>-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은 특화품목지정에서 제외(농림부에서 조정)</p>	<p>○지자체가 특화품목을 지정하여 자금지원함으로써 전략품목을 육성토록 유도</p> <p>*과잉생산 우려시 농림부에서 조정</p>
<p>○사업비 지원대상</p>	<p>(신 설)</p>	<p>○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업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5호이상 농업인 포함 및 단위사업당 국고기준 500만원 이상사업에만 지원</p>	<p>○지역의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의 파급효과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기준설정</p> <p>-선택과 집중지원</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12. 농기계구입지원</p> <p>1. 농기계공급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지원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물·축산전용 농기계 - 친환경정밀농업 기계 ○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구입보조 지원시 용자지원 한도액 범위 설정 ○ 수입농기계 형식명 관리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용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80%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90% - 용자 80% ○ 농기계구입 자금 용자액은 보조 금액과 용자지원액을 포함하여 9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수입농기계의 국내공급자가 1인 이상 일지라도 형식명은 한 개(동일형식)로 통일 - 시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가 미흡한 발작물·축산기계화 촉진 - 친환경 정밀농업기계화 기술개발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 및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 - 동일한 농기계를 별개의 농기계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준용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2. 농기계임대사업 ○ 임차자의 의무부여	(신 설)	○ 부녀·고령영세소농가 및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임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임작업을 실시해야 함.	○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임작업 기피 방지
○ 임대기간설정	(신 설)	○ 단기 : 1년미만 장기 : 1년이상	○ 단기·장기임대기간 설정 필요
○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횟수 명시	(신 설)	○ 1회에 한하여 대체 구입	○ 임대사업자(지역농협)의 부담완화 -지역농협 임대사업 기피 감안
○ 농협종합공제 가입의무화	○ 임차인 가입	○ 임대사업자가 가입	○ 단기 임대시 임차인 가입 거부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13. 농기계사후 관리지원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신 설)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중고농기계 상설 판매장에 대해 보관창고 설치비 지원	○ 중고농기계 상설 판매장 운영 활성화 유도
② 농기계 수리용부품·장비지원	(신 설)	○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을 설치한 사후봉사업소에 대한 지게차 구입비지원	○ 중고농기계 상·하차작업 편리성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③ 중고농기계상설 판매장 지원	○ 국고보조25% (개소당 25백만원) ○ 지방비보조25% ○ 자부담 50%	○ 지원중단	○ 당초지원계획(목표)달성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14.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p> <p>① 지원대상자(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시설 ○ 건조·저장·고품질 시설 <p>② 신규RPC설치 (민간자체조성RPC 심사기준)</p> <p><지역기준></p> <p><시설기준></p> <p><능력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업체가 아니더라도 위성시설 설치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비 확보 가능 면적이 1,000ha 이상인 지역의 업체(적정면적 1,500~2,000ha) *시·군별로 가능한 RPC 개소 당 2,000ha 이상 논 면적 확보 - RPC없는 읍·면 지역 업체 ○ 건조저장능력 각 1,000톤 이상(평창고 능력 외) ○ 최근 1년간 쌀판매 실적이 1,500톤 이상 또는 매출 3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통합대상자 우선 지원 ○ RPC통합 없을 경우, 기존RPC 지원 - 독립된 위성시설은 지원제외 ○ 사업비: 600백만원 (통합RPC한함) - 패키지포함시설;사이로, 저온창고 연속식 건조기, 색체선별기 ○ 원료비 확보가능면적이 2,000ha 이상인 지역의 업체(적정면적 2,000~3,000ha) *시·군별로 RPC개소당 3,000ha 이상 논 면적 확보 - RPC없는 시·군 지역 업체에 한함 ○ 건조저장능력 각 1,500톤 이상(평창고 능력 외) ○ 최근 1년간 쌀판매 실적이 2,000톤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세무신고)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난립방지 및 경영효율화 ○ 통합RPC우대·내실화 ○ RPC의 통·폐합 등 규모화 ○ RPC의 통·폐합 등 규모화 ○ RPC의 통·폐합 등 규모화 ○ RPC의 통·폐합 등 규모화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data-bbox="193 262 427 339"><RPC 운영 협의회 구성·운영></p> <p data-bbox="203 691 382 768"><결정 보고 및 지원사항></p>	<p data-bbox="435 262 725 668">○기 시설된 자체조성 RPC 중 -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원료비 확보면적 등 특정 기준만 일부 미달하는 경우, (중략)RPC 운영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 지원 대상 RPC로 정할 수 있음.</p> <p data-bbox="435 691 725 848">○ 산물수매량 배정, 예산 범위내에서 건조·저장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지원</p>	<p data-bbox="823 262 939 295"><삭 제></p> <p data-bbox="743 691 1027 1099">○ 민간 자체조성 RPC로 인정되어도 1년간 자금 지원 유보, 편입 후 1년 운영실적 경영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예): '04년 RPC로 인정될 경우, '04년은 자금 지원이 안되고, '05년 경영평가결과, 지원 판정이 나면 지원됨</p>	<p data-bbox="1037 262 1234 339">○ 일선 실무자 혼선 초래</p> <p data-bbox="1037 691 1234 768">○ RPC 운영의 효율화</p>
<p data-bbox="165 1168 295 1201">③ 사후관리</p> <p data-bbox="183 1207 417 1240">○ 부도 RPC 재 인정</p>	<p data-bbox="435 1207 711 1240">○ 정상가동 시 즉시 재 인정</p>	<p data-bbox="743 1207 1027 1354">○ 시장·군수: 1차로 적격 여부 검토 ⇒ 시·군 RPC 협의회 심의 → 시·도지사에게 제출</p> <p data-bbox="743 1373 1027 1667">○ 시·도지사 : 민간 자체 조성 RPC에 대한 정책 지원기준에 의한 RPC 적격 여부 검토 → 시·도 농정심의회 또는 RPC 운영 협의회 심의 → 인정 여부 결정 → 농림부 보고</p>	<p data-bbox="1037 1207 1234 1283">○ RPC 운영의 효율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교정검사</p>		<p>○ 신규 RPC로 인정 후 1년간 자금지원 유보 하되, 1년간 운영 실적을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의 경영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p> <p>(예): '04년 RPC로 인정될 경우, '04년은 자금 지원이 안되고, '05년 경영평가 실시 결과, 지원판정이 나면 지원됨</p> <p>- 부도RPC가 타업체에 통합될 경우, 통합RPC 시범사업지원계획에 의함</p>	
<p>④ 운영자금 지원기준</p>	<p>○ 호퍼스케일(수분, 중량)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호퍼스케일(수분, 중량)+ 제한율 자동측정기</p> <p>○ RPC운영자가 운영자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거쳐야 함 (미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p> <p>-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p>	<p>○ 민원의 사전예방</p> <p>○ REC운영의 효율화</p>
<p>⑤ 부실업체 제재</p>	<p>○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없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 ⇒ 정상운영 시 까지 지원 중단(제3자 인수 후 재가동시에는 지원 재개)</p>	<p>○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없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 ⇒ 1년 이상 정상가동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p> <p>- 부도RPC가 타업체에 통합될 경우, 통합RPC 시범사업 지원계획에 의함</p>	<p>○ RPC 운영의 효율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⑥ 경영평가 실시 계획</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추진계획 - '03년: 평가기준·방법마련 - '04년: RPC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개요 - 평가기관 : 추후 지정예정임 - 평가기간 : '04.2~'04.6 ○ 경영평가 절차: ①평가계획통보 (농림부, '04.1)→②평가신청(RPC업체, '04.2)→③평가자료제출(RPC업체, '04.2~3)→④평가 실시(평가전문기관, '04.2~6)→⑤경영평가심의회상정('04.6)→⑥평가결과확정통보('04.6)→⑦자금차등배정, 우수RPC홍보 ○ 경영평가심의위원회구성운영 : RPC그룹분류, 차등지원기준 확정 ○ 경영평가활용 등 차등지원방안 - 평가결과 상위:자금중액지원 - 평가결과 하위:자금감액지원 *경영부실RPC로 판정시 자금 지원 중단, 통·폐합 등 구조조정계획제출 시 자금지원검토 (경영평가심의회 상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우수 RPC 집중 지원
<p>⑦ RPC의 통합 시범사업 추진계획</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시설은 통·폐합, 경영은 책임경영 ○ 세부추진방안 : 경영통합 또는 합병 유도 - 1개시·군에 1~2개 RPC원칙 - 조합경영과 분리, 책임경영 구축 ○ 통·폐합목표: '12년까지 50개소 - '04년 3개 시범사업예정 ○ 추진대상: 구조개선권고(명령) 조합 3년이상 적자RPC 경영평가 하위RPC 등 ○ 통·폐합우대방안 - 건조·저장시설, 운영자금, 수매량 추가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C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추진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16. 사료사업지원 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p>	<p>5.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사업 ○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시설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p> <p>나. 지원대상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 ○ 한우, 젃소 등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는 자 - 전업기준 : 생계유지를 위하여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p> <p>(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 유통체계 구축 ○ 경종농가 : 보리는 '01년도, 마늘은 '02년도 재배농가 중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 등</p> <p>① 지역 농·축협 등 연결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보리·마늘 등 재배농가 - 보리는 '01년도 재배농가, 마늘은 '02년도 재배농가를 우선 선정 * '01년도 보리재배 또는 '02년도 마늘재배 여부를 시장·군수가 확인</p> <p><별표1> 세부사업내용 1. 조사료생산기반시설 ○ 전기시설 : 건조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p>	<p>○ 기반시설 : 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지정지, 목책시설</p> <p>○ 한우, 젃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p> <p>○ 경종농가 :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p> <p>① 지역 농·축협 등 연결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종농가</p> <p>○ 전기시설 : 건조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p>	<p>○ 기반시설 지원을 초지조성에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함</p> <p>○ 사업대상자 범위를 전업농가에서 전체농가로 확대</p> <p>○ 보리·마늘 재배농가에 경종농가로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총채 보리사업 활성화</p> <p>○ 보리·마늘 재배농가에 경종농가로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총채 보리사업 활성화</p> <p>○ 전기시설 지원을 초지내 전기시설로 명확히 함</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진입로(목초)개설 : 목장·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선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에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여 폭 4m내외를 기준으로 함</p> <p><별표 2> 세부사업별 지원기준</p> <p><input type="checkbox"/> 조사료 생산</p> <p>○ 사료작물재배(종자·비료) : 볏짚 암모니아처리,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 보조 50%, 자담 50%</p> <p><input type="checkbox"/> 장비 기타</p> <p>○ 조사료 생산장비 : 용자 80%, 자담 20%</p>	<p>○ 진입로(목초)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선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에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여 폭 4m내외를 기준으로 함</p> <p>○ 사료작물재배(종자·비료) : 볏짚 암모니아처리,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 보조 40%, 자담 60%</p> <p>○ 조사료생산·이용 기계 장비</p> <p>- 연결체 및 10ha이상의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축협조합, 낙우회, 한우회 등 :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p> <p>- 축산농가 등 : 용자 80%, 자담 20%</p>	<p>○ 진입로(목초)개설 지원을 초지로 명확히 함</p> <p>○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처리 등 보조 지원을 낮추고 농가부담을 상향</p> <p>○ 연결체 및 협업체 등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보조지원하여 공동 이용토록 하여 조사료 생산 활성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17.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p>	<p>가. 사업개요 (2) 사업대상자 (나) 공동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단지, 축산계열 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 폐수의 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지역 농·축협 <p>(마) 축분비료유통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축협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 지부 	<p>(2) 사업대상자 (나) 공동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단지, 축산계열 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 폐수의 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p>(마) 축분비료유통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p>한우조합, 양돈조합등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조합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p> <p>“상동”</p> <p>“상동”</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p> <p>○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저장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축산폐수 배수로</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타, 경운기, 축산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p>	<p>(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p> <p>○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축산폐수배수로</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타, 경운기, 축산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축산폐수탈색장치</p>	<p>액비화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저장액비화시설이 아니라도 액비화가 가능한 시설에 지원</p> <p>축산폐수 탈색장치는 퇴비화과정 및 활성오니 정화처리과정을 통해 색도 처리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재처리하여 방류수를 맑게하는 장치로 5종류(활성탄, 전기전해, 오존, 막분리, 광촉매)의 시설이 실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음.</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나) 공동시설</p> <p>○ 축분퇴비 및 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 저장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 건조시설, 공동퇴비사,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p> <p><중략></p> <p>○ 부대 기계·장비 : 축분 발효기계·장비,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 운반차량, 적재용 파렛트, 축산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 살포장비, 스키드로다, 왕겨팽연화장비, 축분 퇴비포장기, 고액 분리기, 축산내유해가스 제거기</p> <p><중략></p>	<p>(나) 공동시설</p> <p>○ 축분퇴비 및 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 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 건조시설, 공동퇴비사,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p> <p><중략></p> <p>○ 부대 기계·장비 : 축분 발효기계·장비,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적재용 파렛트, 축산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 살포장비, 스키드로다, 왕겨팽연화장비, 축분 퇴비포장기, 고액 분리기, 축산내유해가스제거기, 축산폐수 탈색장치</p> <p>※ 축산폐수탈색장치 개소당 한도액: 30백만원이내</p> <p><중략></p>	<p>액비화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저장액비화시설이 아니라도 액비화가 가능한 시설에 지원</p> <p>축산폐수탈색장치는 퇴비화과정 및 활성오니정화처리과정을 통해 색도처리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방류수를 맑게하는 장치로 5종류(활성탄, 전기전해, 오존, 막분리, 광촉매)의 시설이 실용화되어 판매되고 있음.</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라)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액비저장조(규격 은 액비저장조(규격 은 농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뽕프식 교반시설 등))</p> <p><중략></p> <p>2)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호당, 법인체 기준) 15백만원/200톤</p> <p><중략></p> <p>나. 추진체계</p> <p>(5)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p> <p>○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한 예산액 범위내에서 이미 신청한 사업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기초로하여 2004.1.15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4.1.31한 선정 통보)</p>	<p>(라) 액비저장조설치지원: 액비저장조(규격 은 농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뽕프식 교반시설 등)</p> <p><중략></p> <p>17백만원/200톤</p> <p><중략></p> <p>나. 추진체계</p> <p>(5)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p> <p>○ 사업주관 기관은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미 신청한 사업 희망자별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하여 2004.1.15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되,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전에 신용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사업대상자의 대출능력 등 사업비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4.1.31한 선정 통보)</p>	<p>액비의 균질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폭기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p> <p>액비저장조 이용활성화를 위한 폭기·교반시설 추가비용(2백만원) 지원</p> <p>당해 연도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전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신용 및 담보력 부적격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 되는 것을 예방코자 함.</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18. 축산계 열화사업 ②경주마 육성</p>	<p>(11)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상의 유의 사항 <중략> ○ 시·도는 가급적 汚糞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원화(퇴비·액비)시설의 설치 권장(신규 정화처리방류시설은 최대한 억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저장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1999-110호('99.7.8)에 의거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p> <p>○ 공동조련시설 - 10억/개소</p> <p>(신 설)</p>	<p>(11)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상의 유의 사항 <중략> ○ 시·도는 가급적 汚糞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원화(퇴비·액비)시설의 설치 권장(신규 정화처리방류시설은 최대한 억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1999-110호('99.7.8)에 의거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p> <p>○ 공동조련시설 - 자금지원 한도액 10억/개소</p> <p>○5두/호 이내 300만원/두</p>	<p>액비화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저장액비화시설이 아니라도 액비화가 가능한 시설에 지원</p> <p>○ 농가의 현실적인 시설 투자 여력 등 여건 감안 자금지원 한도액 10억원 이내로</p> <p>○ 타 양축농가의 말산업 참여기회 확대 및 과잉마(경주마)도태 유도(경주마생산농가는 제외) * 암말의 경우는 마사회 의 경주마등록말소 및 혈통등록말소, 용도변경확인서첨부 시군에 신청</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19. 한우사업지원</p>	<p>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사업관리수수료 - 지역축협 : 두당 10천원 - 농협중앙회 : 두당 500원 (신 설)</p> <p>(신 설)</p> <p>② 송아지생산기지조성 ○ 지원내용 - 기반시설, 축사등 건축물, 기계장비, 초지조성·보완</p> <p>③ 품질고급화장려금 ○ 지급대상 - 지자체의 거세계획에 따라 '03. 6.30이전에 수소(한우·육우)를 거세하는 농가</p>	<p>○ 사업관리수수료 - 지역축협 : 두당 10천원 - 농협중앙회 : 두당 500원</p> <p>○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의 관리암소와 중복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암소에 대해 지역축협에는 계약 암소 두당 5천원, 농협 중앙회는 두당 250원을 지급 ※ 관리수수료 소요액 총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은 수수료의 두당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 지원내용 - 기반시설, 축사등 건축물, 기계장비, 초지조성·보완 ※ 신규축사시설은 지원에서 제외</p> <p>○ 지급대상 - '04.7.1일 이후 출하하는 거세우 중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여 A1*, B1*, A1, B1등급판정을 받은 생산자(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p>	<p>○ '03년 정가감사시 감사원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간 중복관리업무에 대해 수수료 이중지급 지적통보에 따라 개선</p> <p>○ 관리수수료는 예산액(4,284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함</p> <p>○ 빈축사 활용율 제고를 위해 신규축사 신축은 지원 제외</p> <p>○ 큰소거세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추진을 위해 지급대상 제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20. 가축개량사업</p> <p>가. 한우개량 <추진체계> (가)사업주관기관</p> <p>(다)사업시행 1)사업추진계획 가)한우개량육성</p> <p>⑤등록우관리</p> <p>⑥등록우에 대한 계획 교배</p>	<p>○두당지급액 - (한우) 200천원 - (육우) 100천원</p> <p>○협조기관 : 시·도(시·군), 축산물등급판정소, 전국 한우협회 및 한국중축개량협회</p> <p>①관리조합은 한우개량 농가 육성에 관하여 -----시·군별 한우 산업발전협의회(구, 한우사업추진협의회) 협의 후 확정 추진</p> <p>○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혈통등록 심사에서 합격된 한우</p> <p>○개량농가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정확한 혈통 관리(한우개량농가는 인공수정 증명서 보관관리)</p>	<p>○두당지급액 - 한우 · A1⁺, B1⁺등급 : 300천원, A1, B1등급 : 200천원 - 육우 · A1⁺, B1⁺, A1, B1등급:100</p> <p>○시·도(시·군) : 한우개량 농가 사후관리</p> <p>○협조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전국한우협회 및 한국중축개량협회</p> <p>①관리조합은 한우개량 농가 육성에 관하여 -----시·군별 한우 산업발전협의회(구, 한우사업추진협의회) 협의 후 가축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p> <p>○등록우 관리대상 : 한우 개량농가의 12개월령 이상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로 초종부일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단, 사육규모 정예화를 위해 혈통등록우 1두 이하 사육농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p> <p>○개량농가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정확한 혈통 관리(한우개량농가는 인공수정 증명서 보관 관리 및 관리조합에 신고)</p>	<p>○농가 고급육 생산 촉진을 위해 지급액 상향조정</p> <p>○한우개량사업 실태 점검에 대한 시·도(시·군)의 역할 부여</p> <p>○한우개량사업 운영 계획 수립후 가축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함 (절차 명확화)</p> <p>○관리대상 등록우를 전산입력 자료에 의해 실제 관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한 (규모화를 통한 개량농가 정예화 유도)</p> <p>○절차의 명확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⑦ 한우개량농가 지정 확대 및 혈통등록 이상 상위등록 유도</p>	<p>○ 등록우에 추천종모우 정액으로-----개량자료 조사표 <서식 1>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 조합에 송아지생산 신고 <서식 2></p> <p>○ 관리조합은 어미소의 등록 여부 (등록증과 사육자 및 등록우 연령, 특징등) ----시술자와 수정상황 및 농가 조합비치 관리카드 정비여부, 개량자료 조사표 기재사항의 정확한 측정·측정 여부 등을 송아지생산 확인시 지도·점검하고 조합 관리대장의 정비</p> <p>○ 관리조합은 한우개량 농가의 송아지생산 신고에 의하여 5일 이내-----3~4개월령 이내에 혈통 등록 심사하여 합격축은 혈통등록과 동시에 등록우(암송아지)로 관리</p>	<p>○ 등록우에 추천종모우 정액으로-----개량자료 조사표<서식 1>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2주 이내에 관리조합에 송아지생산 신고<서식 2></p> <p>○ 관리조합은 어미소의 등록 여부 (등록증과 사육자 및 등록우 연령, 특징등) ----시술자와 수정상황 및 조합 관리대장 정비여부, 농가개량자료 조사표 기재사항의 정확 여부 등을 송아지생산 확인시 지도·점검하고 조합 관리대장의 정비</p> <p>○ 관리조합은 한우개량 농가의 송아지생산 신고에 의하여 5일 이내-----생후 6개월령 이내에 혈통 등록 심사하여 합격축은 전산등록</p>	<p>○ 신고 기한의 설정</p> <p>○ 조합은 관리대장 정비, 농가는 자료 조사표 작성 의무 이행</p> <p>○ 관리대상 등록우를 전산입력 자료에 의해 실제 관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한함에 따른 지구 수정</p>
	<p>○ 기초등록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p>	<p><삭 제></p>	<p>○ 기초등록우가 제외되었음을 전년도 명시했음('04년도 삭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⑩개량농가관리	<p>○ 관리조합은 연 1회이상 시·군 관련공무원과 합동으로 한우개량농가 육성 계획 추진실적 및 관리 두수를 지도 점검하고, 개량농가 실태를 조사 평가(전국 한우협회는 자체 실태조사 평가)하여 익년도 한우개량농가 육성계획에 반영(가축 개량사업소는 조사요령을 작성 시달)</p>	<p>○ 시·군은 연 1회이상 관리 조합의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계획대 추진 실적 및 관리현황을 지도 점검하고, 개량농가 실태를 조사평가하여 당해연도 및 익년도 한우개량 농가육성사업에 반영 (가축 개량 사업소는 조사요령을 작성 시달)</p>	<p>○ (시·군)의 역할 부여로 관리 조합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지도 및 감독 기능 강화</p>
⑪개량자료 농가조사 사례비 지원	<p>○ 지원기준 : 기초등록우 35천원, 혈통등록우 60천원, 고등등록우 80천원 상당의 사료비 또는 현금 지급</p> <p>○ 지원방법 : 관리조합은 송아지생산 신고시 현지 확인하여 계획교배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 하고, 자가사육 또는 판매 의향 신고시 개량농가에 사료 또는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p>	<p>○ 지원기준 : 혈통등록우 및 고등등록우에 대하여 60천원/두 상당의 사료비 또는 현금 지급</p> <p>○ 지원방법 : 관리조합은 송아지생산 및 판매의향 신고시 현지 확인하여 계획교배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하고, 개량농가에 사료 또는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p>	<p>○ 기초등록우의 관리대상 제외 및 고등등록우 지원 기준을 유사 사례비 수준으로 조정</p> <p>○ 지원방법 서술을 간략히 함</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⑫등록우 관리비 지원</p>	<p>○등록우 관리지도원의 사업실적에 따라 등록우 관리조합에 따라 관리 조합에 차등지원(기준 : 관리두당 36천원/년)하고, 지도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 실시</p>	<p>○관리조합의 사업실적에 따라 등록우 관리 두당 36천 원/년을 지원하되 사업 수행성과에 따라 감액 또는 회수하고, 지도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 실시</p>	<p>○시·도(시·군)의 실태조사 등의 평가에 근거 하여 사업수행성과 부진 조합에 대한 당해연도 관리비 감액 또는 회수의 근거 마련</p>
<p>나)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p>	<p>○검정장소 :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 대관령지소)</p>	<p>○검정사업자 : 가축개량 사업소(남원지소, 대관령 지소) 및 가축개량사업소.</p>	<p>○후대검정 장소의 추가</p>
<p>⑤후대검정</p>	<p>○후대검정용 수송아지(검정 대상축) 확보 -가축개량사업소와 축산 기술연구소간의 용역 계약에 의하여 검정 대상축을 확보하되 산지 평균 시세의 130%이내 에서 매입</p>	<p>○후대검정용 수송아지(검정 대상축) 확보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 대상축을 확보하되 산지 평균 시세의 130%이내 에서 매입</p>	<p>○후대검정 사업자의 변경</p>
<p><행정사항> (가)사후관리</p>	<p>(신 설)</p>	<p>○시·도(시·군)는 한우개량 농가육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관리 조합을 지도점검</p>	<p>○시·도(시·군)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p>
<p>(4)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p>	<p>(신 설)</p>	<p>○2005년도부터 사육규모 및 정예화를 위해 한우 개량농가육성사업 관리 대상중 혈통·고등 등록우 5두 미만 사육농가는 등록우관리 대상에서 제외</p>	<p>○한우개량농가의 단계적 규모화 및 정예화 유도</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나. 젓소개량</p> <p>나)젓소정액 생산·공급</p>	<p>○ 농협중앙회 젓소개량부는 ----수립하여추진</p> <p>-고능력 정액도입 및 수정란에 의한 국내 송아지생산 매입으로 당대 검정축 확보</p>	<p>○ 농협중앙회 젓소개량부는 ----수립하여 추진</p> <p>-고능력 정액도입 및 수정란에 의한 국내 송아지생산 매입으로 당대검정축 확보(산지 시세평균의 200%이내 에서 매입)</p>	<p>○ 매입가격 구체적 명시</p>
<p>다.돼지개량</p> <p>(3)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 1)사업내용</p>	<p>○ 시·도에 종돈업 신고를 필한 ----- 농장검정 실시</p> <p>○ 종돈업신고를 필한 -- -----자가검정 실시</p> <p>○ 국내에서 능력검정을 필한 종모돈을 구입한 정액등처리업체 종모돈 구입비 일부 보조</p>	<p>○ 시·도에 종돈업 등록을 필한 -----농장검정 실시</p> <p>○ 종돈업등록을 필한 -- -----자가검정 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종돈업신고제 에서 등록제로 변경에 따라서 등록으로 수정</p> <p>○ 종모돈 구입비 예산 미반영</p>
<p>2)지원내용</p>	<p>○ 지원대상자</p> <p>-검정소검정 및 농장검정 (입회) : ----- 농장검정(자가)-----</p> <p>-수 태 지 검 정:종 돈 업 신고업체</p> <p>-PSS유전자 검사 : ----</p> <p>-종모돈구입 : 시··에 등록된 정액등처리업체</p>	<p>○ 지원대상자</p> <p>-농장검정(입회) : ---- 농장검정(자가)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PSS유전자 검사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검 정 소 검 정, 수태지검정 및 종모돈 구입비 예산 미반영</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추진체계> (가)사업주관기관</p> <p>2)사업추진방법</p> <p>3)사업비지원방법</p>	<p>○ 지원기준 -농장검정비(입회) ----- -수확지검정비: 수확지 검정 완료도에 대하여 두당 25,000원</p> <p>※예산집행 완료후에는 농장검정비를 적용하여 지원</p> <p>-PSS유전자검사비: --- -인공수정용 종모돈 구입비: -----기준적용(2001.5. 31 기준마련 시행)</p>	<p>○ 지원기준 -농장검정비(입회)----- <삭 제></p> <p><삭 제></p> <p>-PSS유전자검사비: --- <삭 제></p>	<p>○ 검정소검정, 수확지검정 및 종모돈 구입비 예산 미반영</p>
	<p>○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종모돈 구입비 지원</p> <p>○ 대한양돈협회는 검정소 검정·농장검정을, --- PSS유전자검사를, 가축 개량사업소는 종모돈 구입 사업을 추진</p>	<p><삭 제></p>	<p>○ 종모돈 구입비 예산 미반영</p>
	<p>○ 검정관련자료수집 -검정기관 및 종돈업신고 업체에서----D/B구축</p> <p>가)검정비, PSS유전자 검사비, 검정소시설비</p> <p>○ 가축개량사업소는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검정기관 및 종돈업신고업체가 지정한---보조금 입금</p>	<p>○ 검정관련자료수집 -검정기관 및 종돈업등록 업체에서----D/B구축</p> <p><삭 제></p> <p>○ 가축개량사업소는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검정기관 및 종돈업등록업체가 지정한---보조금 입금</p>	<p>○ 종돈업신고제 에서 등록제로 변경에 따라서 등록으로 수정</p> <p>○ 사업비 분류 불필요</p> <p>○ 종돈업신고제 에서 등록제로 변경에 따라서 등록으로 수정</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나)인공수정용 종모돈 구입비 모든 구입비	나)인공수정용 종모돈 구입비 ○정액등 처리업체는 검정 기관----- ○종모돈 구입비 지급신청 마감기한은-----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삭 제>	○종모돈 구입비 예산 미반영
21.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			
①농산물물류표준화			
4. 기타	<대상사업>		
	○파렛트(개소당 50매이내)·플라스틱상자(개소당 500매이내)·지게차·전동차·광폭차량·마늘탈피관련기기·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비 <지원조건> ○지원비율 : 사업비 단가 기준 보조 40%, 용자 30%, 자부담 30%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콘테이너 추가. - 사업단가 13,000천원 (실거래가 적용) ○지원비율 : 사업비 단가 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일정기간 (기간은 정부물품 내 용년수를 준용한다.)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사업대상 물류기기 추가 (냉장컨테이너 지원가능) ○ 보조지원을 변경 ○ 관리기간을 명시
②물류기기공동이용 촉진			
4. 기타	<지원대상>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회원조합, 전문조합 등),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지역농협, 농협회원조합, 전문조합을 농협으로 통일 (이하 같음)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사업내용></p> <p>○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입차, 농산물을 적재(포장화)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점에 출하하는 경우 입차료 일부 보조</p> <p><사업기준단가></p> <p>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출하시(사용기간 10일 이내) 파렛트 : 1,481원/매, 플라스틱상자 : 415원/매, 다단식목재상자 : 959원/매.</p> <p><보조금 신청 및 정산></p> <p>○ 회원조합(조합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 신청분) → 지역본부 → 중앙본부 (회원조합 신청내역과 풀 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농산물유통사업장별 입고내역 대사확인) → 농림부</p>	<p>○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입차, 농산물을 적재(포장화)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입차료 일부 보조</p> <p>① 좌동 ……, 팠릿철상자 : 3,836/매 추가</p> <p>○ 농협(조합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 신청분) → 지역본부 → 중앙본부 (농협 신청내역과 풀 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농산물유통사업장별 입고내역 대사확인) → 농림부</p> <p>○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연합회(산지유통인 신청내역과 풀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농산물유통사업장별 입고내역 대사확인) → 농협중앙회 → 농림부</p>	<p>○ 가공공장 포함 ('03.8부터 시행중)</p> <p>(‘03.8부터 시행중)</p> <p>○ 팠릿철상자를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 대상기종에 포함</p> <p>○ 산지유통인연합회가 산지유통인사업을 지도·지원토록 함</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운용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은 풀회사와 물류기기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및 FAX로 풀 회사에 사용 3일전 까지 물류기기별 사용량 입고 요청 ○ 물류기기를 이용 출하시 『송품장(별지 제3호 서식)』에 물류기기의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여 출하하고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붙임 양식)』에 출고내역을 기재하여 풀 회사에 통보 <p><운용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조합은 매 분기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분을 지역본부에 신청단,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분(VAT 포함) 이용료를 회원조합에 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은 풀회사에 물류기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전화 및 FAX로 풀 회사에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별 사용량 입고 요청 ○ 물류기기를 이용 출하시 거래명세서에 물류기기의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여 출하하고 『공동이용물류기기 관리부(붙임양식)』에 출고내역을 기재하여 풀 회사에 통보 ○ 농협은 매 월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을 지역본부에 신청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분(VAT 포함) 이용료를 농협에 선납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은 매월별 보조금을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신청시 자부담분(V.A.T포함)이용료를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선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기기 사용신청서를 풀 회사가 확인함으로써 계약체결을 같음 ○ 출하통지서, 거래명세서, 송 품 장 을 “거래명세서”로 통일 ○ 매월별 정산 (현행)으로 정정 ○ 산지유통인연합회가 산지유통인사업을 지도·지원토록 함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③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p> <p>1. 사업분류</p> <p>2. 사업내용</p> <p>3. 지원대상</p>	<p>○영농조합법인 등이 보 조금 신청시 첨부 자료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 - 출하통지서(송품장) -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 공판장)등록증 사본 (전국농산물산지유통 인의 경우)</p> <p>○농산물규격출하</p> <p>○포장재비, 포장화 우대 품목으로 분류 *공동선별비는 농협중앙 회의 세부지침으로 시행</p> <p>○공동선별비를 산지유통 전문조직에 대해서만 지급</p> <p>○포장화 우대품목 상차비 지원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 망 (스티커포함), P·E대, P·P대, 지대</p>	<p>○영농조합법인 등이 보 조금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 - 거래명세서(송품장 등) -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 공판장)등록증 사본 (전국농산물산지유통 인의 경우) - 포전매매계약서, 계근표 (계량증명서), 세금 계산서 등 가공공장 출하량 확인 자료</p> <p>○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p> <p>○포장재비, 공동선별비, 포장화 우대품목으로 분류</p> <p>○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포함하여 '04년도에 선정된 신규 산지유통 전문조직까지 추가 신청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은 1순위 신규 산지유통전문 조직은 2순위</p> <p>○기존 포장재에 플라스틱, 다단식 목재 상자 확대</p>	<p>○가공공장에 출하시 수량 확인 증빙서 확보</p> <p>○공동선별비 지원내용 포 함으로 시행 지침 내실화</p> <p>○공동선별비 지원확대로 공동선별 및 규격화 촉진</p> <p>○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이용으로 포장재 재사용 이 가능하여 포장재 쓰레기 발생 최소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4.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화 우대품목 상차비 지원 - 무, 배추, 마늘 ○ 포장화율이 100%이고 표준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 (사과, 배, 장미, 백합, 들깨잎)에 대해서는 25% 지급 ○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중 곡류, 두류에 대해서도 포장재 지원(30%) ○ 포장재 용적별 사업단가와 납품단가중 낮은 단가 적용 ○ 공동선별비 kg당 지원단가를 최대 80원으로 한정하여 30%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화 우대품목 상차비 지원대상을 기존 무, 배추, 마늘을 포함하여 양배추까지 확대 ○ 표준규격을 80%이상인 기존품목에 주키니호, 박, 방울토마토, 조롱수박을 추가하여 지원비율 20% 하향 조정 ○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중 곡류, 두류는 지원비율 하향 조정(30→20%) - '05년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고 ○ 납품단가 적용 - 최고사업단가 1,200원 이내/매 ○ kg당 선별비를 조사하여 실제 선별비를 기준 등으로 지원하고 지원비율 차등지원 - 수탁공동선별비 40% - 매취공동선별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배추에 대해서도 수확상차비를 지원함으로써 표준규격 상품화 촉진 ○ 포장화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축소 ○ 곡류, 두류는 포장율 100%는 양곡관리법 대상농산물임 ○ 농산물의 상품화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제작하는 납품단가를 적용 ○ 선별비를 현실화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공동선별 및 규격화를 촉진하고 품질향상 도모
5. 지원조건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조직(농가)에 대하여 신청량 100% 지원 ○ 생산조직 평가대상 항목을 수출증대 실적을 포함 21개 항목으로 배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농약 친환경인증 조직(농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반영하고, 품질인증조직(농가)등은 중전과 같이 신청량 100% 지원 *생산자조직 평가시 인증조직, 농가에 대하여 가점부여 ○ 생산자조직 평가대상 항목에서 수출증대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변경 배점 배정 ○ 저농약친환경 조직(농가)에 대한 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의 차등지원 실현 및 조직간의 선의경쟁 유도로서 규격화사업 활성화를 도모 ○ 저농약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대폭 증가 -('01) 1천호 → ('03.8) 10 ○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실적을 수출실적으로 변경하여 평가 ○ 저농약친환경 조직(농가)은 일반농가에 비해 우대 조치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22.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사업</p> <p>①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p> <p>○ 지원 대상 조직의 유형과 신청자격</p>	<p>○ 선도농협형, 연합판매형, 마켓팅법인형</p> <p>○ 전년 매출실적 30억원 이상(축협, 축산·양곡류 제외)</p> <p>- 사업포기조직은 지원 제한</p> <p>○ 품질관리 전담인력 1명 확보</p> <p>○ 조직·인력, 물량조달 방식, 품질관리 조건 계획 수립</p> <p>(신 설)</p>	<p>○ 선도조직형, 사업연합형 공동마켓팅법인형으로 변경</p> <p>- 선도농협형 및 마켓팅법인형은 선도조직형으로 통합</p> <p>- 연합판매는 사업연합으로 명칭 변경</p> <p>- 공동마켓팅법인은 수개의 생산자조직 등 출자 법인체로 개념화</p> <p>○ 좌동</p> <p>- 자금전액회수조직(퇴출조직)은 3년간 신청자격 제한추가</p> <p>○ 유통전담부서 설치 및 마케팅전담 실무인력 2명이상 확보</p> <p>○ 계약재배 출하조직, 품질관리기준 갖추고 있을 것</p> <p>○ 유통효율화 목표관리 계획 수립 및 중점 평가요소화</p> <p>- 3년내 공동계산, 파렛트 출하율 목표 20%</p>	<p>○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규모화 추세에 따른 사업 대상의 개념 확장</p> <p>○ 사업실적 평가 결과반영 강화</p> <p>○ 신청자격 강화(당초) 추진 계획 요구 → 변경) 既成요건화</p> <p>○ 공동계산, 파렛트 등 핵심 과제 추진 및 평가 강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심사기준 ○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선정심사 체계개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 평가 동점처리 - 인센티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선정대상(가점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조직,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시행조직 등 ○ 기본점수우대 : 연합사업 조직, APC, 공동규격 출하조직 <li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 농협중앙회 단독 심사 및 순위 부여, 심사결과 농림부 제출 ○ 사업금액의 ±20% 범위내 사업대상자 자율적 변경가능 ○ ±20% 초과시 농협 중앙회 승인 <li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li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 지원조건 : 무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선정대상 조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마케팅조직, 사업 연합, 광역조직 ○ 기본점수 우대 : 공동선별 계산조직, APC운영조직, 유희시설 인수조직, 자조금단체 가입조직 ○ 사업신청조직의 자금 조달 능력 심사 추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합동 선정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평가결과가 없는 지원 신청자 현지 실사 ○ ±30% 범위내 자율 변경 가능 ○ ±30% 초과시 농협 중앙회장 승인 ○ 유통효율화목표이행평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내 공동계산, 파렛트 출하율 20%달성 ○ 유통사업조직 및 전문 인력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C 책임경영체제 및 유통전문인력 배치상황 ○ ①공동계산비중, ②계량 부문점수 ③매출액이 높은 순위 부여 ○ 마케팅법인형 :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조직의 전문화·규모화 촉진 ○ 지원조직의 자금운용 건전성 강화 ○ 선정심사 객관성 강화 ○ 사업대상자의 사업재량 보장 ○ 유통 효율화 및 유통 사업 경영혁신 평가기준 보완 ○ 평가기준 보완 ○ 무이자자금지원에 필요한 실비부과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 사업의무량산출방법	○ 유통사업운전자금 - 운전자금 운용실적 30% (평잔100%)	○ 자체공판장, 가공공장은 운전자금 운용실적 15% (평잔의 50%)만 인정 (단, 화훼품목조합은 '05부터 적용)	○ 유통사업 지원 자금운영 효율성 강화
② 일반조직산지유통 활성화지원	○ 읍자예산 120,770백만원 - 일반조직유통활성화 84,670 - 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 30,000 - 화훼비회원조합지원 3,000 - 참다래생산조직지원 2,000 -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 1,100	○ 예산 105,281(△12.8%) → 74,281(△10,389백만원) → 27,000(△3,000) → 3,000 → - ('03 미집행) → 1,000(△100)	○ '03까지의 지원 실적을 감안, 예산 범위내 조정
○ 지원제한 - 일반조직유통활성화 -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지원차별화	○ 산지유통전문조직 ○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 및 시설채소약정출하 사업품목 ○ 과실계약출하사업품목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지원 - 평가결과 지원한도액 · A등급 : 30억원 · B등급 : 20억원 · C등급 : 15억원 · D등급 : 9억원 · E등급 : 6억원 · F등급 : 3억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실)에 참여 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참여 품목 → 3억원 → 1.5억원	○ 지원제한내용 명확히 표현 ○ 부실 사업자 지원한도 축소 *'05년 지원 방향 예고
		*'05부터 E, F 등급사업 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지원중단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2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p> <p>○ 시책 및 추진방향</p> <p>○ 지원대상 범위</p> <p>○ 지원조건</p> <p>○ 지원규모</p> <p>○ 사업시행</p>	<p>○ 신규시설설치는 가급적 억제, 기존시설보완위주 지원</p> <p>○ 생산자단체, 시장·군수, 유통업체</p> <p>○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20%, 용자40, 지방교부금20</p> <p>○ 지자체 : 국고60%, 지방비40</p> <p>○ 시장·군수 : 15억원</p> <p>○ 생산자단체 : 8억원</p> <p>○ 지자체형 사업 - 위탁운영자 변경은 시장·군수 승인</p>	<p>○ 기존시설보완은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상품화 시설 지원</p> <p>○ 소규모시설 설치는 억제하되, - 군 또는 2-3개면이상 사업 규모화 및 기존시설과의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 확보시 지자체형 시설 지원</p> <p>○ 유희시설 설비인수 운영하는 시설 보완 우선 지원</p> <p>○ 일반 유통업체(용자8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산지생산자조직과 공동투자(생산자조직 지분 50%이상)시 생산자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p> <p>○ 운영실태평가 결과 E 등급이하 사업자 지원제외</p> <p>→ 국고보조 30, 지방비 20</p> <p>→ 국고보조 50%, 지방비50</p> <p>○ 규모화신규시설 : 20억원</p> <p>○ 기존시설보완 : 8억원</p> <p>○ 지자체형 사업 - 사업 초기년도의 위탁운영자변경시는 농림부장관 승인</p>	<p>○ 산지유통시설의 광역화, 전문화 촉진</p> <p>○ 부실 시설 인수도 촉진 등 활용도 제고</p> <p>○ 산지-소비자유통주체간 사업연합, 공동투자 법인 등 지원허용</p> <p>○ 평가결과 반영 운영능력기준 강화</p> <p>○ 지방비·자부담율을 상향, 사업난립방지</p> <p>○ 국고부담율 완화</p> <p>○ 산지 시설의 규모화 촉진</p> <p>○ 사업선정후 위탁운영자 임의 변경 방지</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사후관리</p>	<p>○ APC시설설계 컨설팅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지자체형 사업</p> <p>- 시설·설비설계·시행시 운영주체와 충분한 협의 의무 부과</p> <p>- 한식연 등 시설전문 컨설팅을 거치도록 함</p>	<p>○ 지자체형 사업</p> <p>- 예산절감 위주 부실시공 방지하고 운영주체의 책임성 제고</p>
<p>○ 신청자심사평가 기준</p>	<p>○ 사업평가요소</p> <p>- 사업동기 의지 평가</p> <p>- 대표자·경영진 평가</p>	<p>○ 경영구조 및 전문인력 평가 요소 신설</p> <p>- 독립채산 책임경영, 분사형 경영 등 점수 우대</p> <p>- 마케팅전담인력 확보</p>	<p>○ 주관적 평가 요소 삭제 및 경영체제, 인적 자원 평가 강화</p>
<p>○ 운영실태평가 및 지원</p>	<p>○ 사업평가요소</p> <p>- 경영개선 노력</p> <p>- 매취자금 운영실적</p> <p>○ 평가등급별 지원한도액</p> <p>- E등급(6억원), F(3억원)</p>	<p>○ 경영구조 및 전문인력 평가 요소 신설</p> <p>- 독립채산 책임경영, 분사형 경영 등 점수 우대</p> <p>- 마케팅전담인력</p> <p>○ 가점: 유희 시설 양수자</p> <p>○ 한도액 조정</p> <p>- E등급(3억원), F(1.5억원)</p>	<p>○ 차별화 되지 않는 주관적 평가요소 삭제 및 경영구조, 전문인력 평가 강화</p> <p>○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차별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26. 농수산물 소비자 유통기반확충</p> <p>① 농수산물 종합유통 센터건설</p> <p>4. 기타</p>	<p><시책 및 추진방향></p> <p>○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주체가 취급할 수 없는 특정품목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비직영(임대는 제외) 운영 가능(단, 최소한의 범위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상품구색 갖추기용으로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판매 총면적과 직판물 매출액 대비 5% 이내를 말한다)</p>	<p>○ 직영을 원칙(임대는 불가)으로 한다.(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 규정하는 특정매입거래 방식은 시설물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며, 운영에 전문기술 요구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p>	<p>○ 직영원칙에서 특정매입거래 방식에 대한 예외인정으로 지자체와 운영주체의 오해소지를 방지</p>
<p>27. 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p> <p>① 농산물자조금 조성</p> <p>○ 자조금 조성 대상 품목</p>	<p>○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고,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p>	<p>○ 자조금 조성 제외 품목 - 다만, 주로 수입원료로 재배되며 기업적 경영자가 생산·유통을 담당하여 전국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제외할 수 있음</p>	<p>○ 콩나물 등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 제외</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자조금조성단체</p>	<p>○ 전국 생산량(액)대비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이상인 단체</p>	<p>○ 자조금 납입 구성원 최소 기준 설정 (단, 자조금 납부하는 생 산자가 50가구 이상이어 야 함)</p> <p>○ 자조금조성단체의 생산자 단체, 생산자의 자조금단 체 가입 촉진 노력 의무 부과</p> <p>-농협법상 품목조합연합회 는 총회 및 자조금관리위 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조 합, 영농법인의 자조금납 입 등 사업 참여 허용할 수 있음</p>	<p>○ 소규모 자조금 단체 난립방지 및 품목군별 자조금조성 촉 진 유도</p> <p>○ 자조금단체가 품목대표조직 으로서의 개방 성을 갖도록 의무화</p>
<p>○ 자조금 관리위 원회 등의 운영 경비</p>	<p>○ 연간 자조금 적립액 (보조금 제외)의 5% 해당액(연간 1억원이 내) 또는 20백만원 범위내에서 자조금관 리위원회 및 사무요 원의 운영경비 사용</p>	<p>○ 단, 동일 자조금조성단체 에서 2개이상 품목을 조 성·운영할 경우 운영경비 의 한도기준의 50% 범위 내 추가사용 가능</p>	<p>○ 2품목이상 조 성단체에 추가 로 소요되는 운영 및 관리 경비 허용</p>
<p>○ 자조금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p>	<p>○ 자조금조성단체 계획 수립 및 승인 체계</p>	<p>○ 이미 자조금조성단체 승 인을 받은 경우 매년 2월 28일까지 자조금계획 수 립 및 승인 신청</p> <p>- 자조금 신규조성 추진시 는 연중 가능</p>	<p>○ 계획적인 자조 금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도모</p>
<p>② 축산자조금조성 2 신청자격·절차·구 비서류</p>	<p>○ 자조금조성품목 -낙농, 양돈, 양계</p>	<p>○ 자조금조성품목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육</p>	<p>○ 민간자율수급 조절 기능 확 대를 위한 대 상품목</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29.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4. 기타 ○ 목적 ○ 수출조성비 ○ 수출전문단지 인센티브 ○ 물류비와 인센티브 지원 한도	○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 ○ 예산의 3% 이내 ○ 표준물류비의 5% 이내 ○ 수출금액의 40%이내	○ 국제규범의 준수 및 전지 수출업체·농가의 문성 향상을 위한 원(추가) ○ 예산의 10% 이내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 수출금액의 30%이내 (전문단지는 40%)	○ 개도국 지위 상실시를 대비하여 타용도(허용보조)로도 지원할 있도록 지원목적 확대 - 현재, 물류비는 개도국 우대 수출보조로 지원하고 있음 ○ 허용보조 예산 비율의 점진적 확대로 물류비 지원중단시의 충격 최소화 ○ 수출전문단지의 집중 육성 ○ 물류비 수평목적의 덤핑수출 가능성 차단
30. 농산물 수출진흥 사업 ②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 4. 기타 가. 시설규모및사업비 표준단가 나. 지원조건 라.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20만평 (평당 137천원) ○ 국고(보조20%, 융자40%), 지방비20%, 자부담 20%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고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 . . 나머지 금액은 . . . 연간 사업량이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12만평 (평당 207천원) ○ 국고보조30%, 지방비20%, 자부담 50%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고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 . .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 . . 연간 사업량이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 집행	○ 양액재배시설(70천원/평) 추가 ○ 지원조건 조정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2003.9.5)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31. 우수농산물지원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1. 사업분류	○사업항목 - 원료구매지원 - 운영활성화 지원 · 우수농산물유통지원 · 유망품목시장개척사업	○사업항목을 통합 - 우수농산물유통지원	○유사·중복업무의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화·간편화
2. 신청자격·절차 구비서류	○대출취급기관 -원료구매지원:유통공사 -운영활성화 지원 · 우수농산물유통지원 : 유통공사 ·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 : 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대출취급기관을 유통공사로 일원화 - 단, 기존 유망품목시장개척사업은 농협에서도 지원가능 · '04년중 담보제공문제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 '05년부터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일원화	○대출취급기관이원화에 따른 민원인 혼란·불편 해소
3. 선정기준·우선순위·절차	○제재사항 - 관련법령 위반시 대출 제한 등	○제재사항 추가 - 수입국의 안정성 규정 위반, 수출질서 문란행위 및 국익 손상행위도 제재	○전체 농산물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도 제재규정에 추가함으로써 자체 품질·안전성관리 강화 유도
4. 기타 ○지원대상	○농협무역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농협무역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을 유통공사로 변경	○농협무역도 일반 수출업체와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심사평가하여 지원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32. 축산물유통개선 사업</p> <p>① 축산물 도축·가공 시설 설치지원</p> <p>○ 세부사업명</p> <p>○ 세부사업별 예산운영</p> <p>○ 사업기간</p> <p>○ 지원한도액</p>	<p>· 도축장시설현대화</p> <p>· 공판시설</p> <p>· 육가공업체</p> <p>· 닭고기부분육시설</p> <p>· 계란집하장</p> <p>· 브랜드가공시설</p> <p>○ 세부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각각 운영</p> <p>○ 1년/1~2년/</p> <p>○ 도축장시설현대화 : 5,600백만원</p> <p>○ 육가공업체 : 1,050백만원</p>	<p>○ 도축·가공시설</p> <p>- 도축시설</p> <p>· 도축장시설현대화</p> <p>· 도축장시설보완</p> <p>· 오리도축장시설보완</p> <p>- 축산물가공시설</p> <p>· 육가공업체</p> <p>· 닭고기부분육시설</p> <p>· 계란집하장</p> <p>· 유제품개발생산시설</p> <p>- 시유전문가공시설</p> <p>○ 도축·가공시설 전체예산 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 예산구분 없이 수요에 의해 배정 및 집행</p> <p>○ 1~3년차로 추진 (사업계획에 의함)</p> <p>○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p>	<p>○ 도축·가공시설 사업으로 단일화</p> <p>○ 육가공업체 사업으로 지원</p> <p>○ 자금 집행을 제고 및 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 (종합자금제 형식으로 전환)</p> <p>○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p> <p>○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신 설)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3조에 의한 대출 취급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시 담보능력 확인으로 공사완료후 담보부족에 따른 예산미집행 사례 방지 ※ 대출가능 여부 검증
○사후관리	○분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 및 지도실시	○분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 및 지도실시(사업완료이후는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②축산물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세부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종합처리장 - 도매시장·공판장 - 오리도축장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가공업체 - 계란등급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가공시설운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종합처리장 - 도매시장·공판장 - 오리도축장 - 도축장 - 육가공업체 - 계란등급시설 - 한우유통추진체 	○유사사업을 가공시설 운영자금으로 통합운영
○세부사업별 예산운영	○세부사업 단위별로 예산운영	○가공시설 운영자금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 예산구분 없이 수요에 의해 배정 및 집행	○자금집행을 제고 및 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용(종합자금제 형식으로 전환)
○LPC 운영자금 지원자금 제한사항	○준공 또는 가동개시후 5년 경과업체는 50%, 5년이내는 30% 이상을 원료구매자금으로 집행 ○LPC업체별 평균가동율이 60%이하일 경우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80% 이내로 함	<삭 제>	○대일수출중단 등 LPC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자금 용도 등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③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칭 ○ 사업 주관기관 ○ 사업대상자 지정 취소 및 수시 선정제도 도입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소매점, 브랜드가맹점, 닭고기체인점 ○ 시·도(시·군·구) ○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p><한우유통브랜드경영체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브랜드경영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유통업체 ○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소, 11,250백만원 (기금70%, 자부담30)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육 구매자금 지원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4%, 1년거치 일시상환 <p>○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구 및 농협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구에서 농협에 사업자금 지출 추천 * 대출추천 즉시 대출심사착수 ○ 지원자금 범위내 수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9월까지로 제한 · 대출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 대출금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지정 취소 ·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 대출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경영체의 판로확보 및 고급육 유통체계구축을 위해 유통브랜드경영체 육성 ○ 3개사업 통합, 종합자금제 형식으로 추진 ○ 종합자금제 형식 추진 ○ 실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탈락 방지 ○ 자금휴면방지 및 중도포기 최소화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⑤산지축산물 생산유통 지원</p>	<p>(신 설)</p>	<p><한우브랜드경영체육성> ○ 지원대상 -2000두이상의 사육두수를 확보하고 농가조직화, 품질균일화를 통해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생산자단체 ○ 지원액 -30개소, 750억원 (기금80%, 자부담20) ○ 지원내용 -계통출하선급금, 매취 사업자금, 사료공동구매 자금, 위탁·예탁사육비, 브랜드 홍보 관련 자금 ※ 소 입식자금은 지원을 제외하며, 본 자금으로 지원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산지축산물 생산유통활성화자금 지원 제외 ○ 지원조건 -연리3%, 3년거치 일시 상환</p>	<p>○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가조직화하고 브랜드 육성을 통해 한우고기 고급육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브랜드경영체 육성</p>
<p>33.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p> <p>②축산물 검사</p> <p><input type="checkbox"/> 축산물검사예산</p> <p><input type="checkbox"/> 검사장비 구입내역</p>	<p>○ 예산액 : 3,106백만원 -검사장비 : 2,000백만원 -재료비 : 838 -원규검사보조원 : 108 -장비유지보수비 : 160</p> <p>○ 구입 : 44종 98점</p>	<p>○ 예산액 : 3,135백만원 -검사장비 : 2,000백만원 -재료비 : 838 -원규검사보조원 : 137 -장비유지보수비 : 160</p> <p>○ 구입 : 48종 93점</p>	<p>○ 증 29백만원 ※ 원류검사 보조원 8명 증원 ('03)30명 → ('04)38 -원유검사실시 기관 13개소에 3명씩 배정 (제주도는 2명) ○ 각 시·도에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구입</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사업실적보고</p> <p>34. 학교우유급식사업 (5)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p> <p><추진체계> (사)급식대상우유: 235원/200ml 백색우유·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제품(멸균유, 치즈)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유로 공급할 수 있음 (22g 120원)</p>	<p>○ 추진실적보고 -분기별 추진실적보고</p> <p>○ 급식대상자 선정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조 대상자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p> <p>○ 급식대상자 선정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조 대상자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p>	<p>○ 추진실적보고 -‘04.7.15까지 상반기 현지 점검 결과와 함께 사업 추진 경과보고</p> <p>○ 시장·군수·구청장이 증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p> <p>○ 시장·군수·구청장이 증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p>	<p>○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반기별 사후관리 점검과 동일하게 추진실적 보고 일시 조정</p> <p>○ 관련법 대체 입법 및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대체입법(‘97.9)>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개정(‘02.12)> ○ 모자복지법 → 모·부자복지법</p> <p>○ 관련법 대체 입법 및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대체입법(‘97.9)>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개정(‘02.12)> ○ 모자복지법 → 모·부자복지법</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36. 친환경농업육성			
1. 사업분류	37. 친환경농업육성 ①대규모지구구성사업 ②소규모지구구성사업 ③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37. 친환경농업육성 ①친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 ②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 대·소규모지구 사업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규모 추진
2. 신청자격·절차· 구비서류	○ 농경지가 50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지역으로 사업 참여농가가 50호 이상으로 그 지역 내 전체 농가의 1/2이상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 소유농지 2.0ha이하인 농가로서 10농가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포함)	○ 농경지가 10ha이상으로 집단화된 지역으로 사업 참여농가가 10호이상인 지역. 다만, 10ha·10호 미만지역이라도 시·도가 지구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규모에 따른 (면적, 참여농가) 을 폐지하여 적정규모사업 추진의 효율화 도모
3. 선정기준·우선순위·절차	○ 사업자선정: 신청→심의→확정→사업계획수립및 착수→사업비집행→사업 완료및친환경농업실천	○ 사업자선정: 좌동	
4. 기타로 분류하여 각각의 해당사항을 기재	○ 지원단가: 대규모10억원, 소규모2.5억원 ○ 지원조건: 공동과 개별 시설 6:4적용 -공동:국고32, 지방비32, 자담36% -개별:국고20, 지방비20, 자담60% ○ 사업메뉴: 공동이용시설과 개별시설로 구분	○ 지원단가:사업규모에 따라 2~10억원 ○ 지원조건:국고40, 지방비40, 자담20 -생산시설·장비(개별·공동 포함)에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가능 ○ 사업메뉴:공동과 개별 메뉴구분 폐지	○ 규모에 따른 사업비 책정의 문제점 보완 및 사업참여 농가의 자부담 경감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37.농업종합자금지원</p> <p>2. 시책 및 추진 방향</p> <p>○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p>	<p>○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수요자의 필요에 의거 일괄지원</p>	<p>○ 수요자 필요에 따른 일괄지원 대상자금에 농기계구입자금(2,000만원이상), 후계농업인육성, 객토자금을 포함</p> <p>- 다만, 농기계생산 지원자금 및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04년도 예산중에서 각각 100억 및 30억 한도내에서만 지원</p>	<p>○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종합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기본취지에 따라 농기계구입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객토자금을 일괄지원대상에 포함</p> <p>○ 다만, 농업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후방연관산업의 경우, 일괄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한도내에서만 대출</p>
<p>3. 근거법령</p>	<p>○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2항</p>	<p>○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2항</p> <p><추가></p> <p>○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인육성)</p> <p>○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p> <p>○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p>	<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제조업자에게 지원하는 근거조항 구체화</p> <p>○ 후계농업인육성 지원근거 명시</p> <p>○ 법적근거 명시</p> <p>○ 토양개량사업 지원 법적근거 명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4. 2004년도 지원계획	<p>○ 2002사업비 (계)723,000백만원 -국고융자 148,000 -대출기관융자 575,000</p> <p>○ 2003년사업비 (계)540,000백만원 -국고융자 108,000 -대출기관융자 432,000</p> <p>*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신 설)</p>	<p>○ 2003년 사업비 (계) 540,000백만원 -국고융자 108,000 -대출기관융자 432,000</p> <p>○ 2004년 사업비 (계) 578,900 -국고융자 115,800 -대출기관융자 463,100</p> <p>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과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급</p>	<p>○ '04년 예산반영</p> <p>○ 농업인이 아닌 법인대상사업에 대해 한도설정</p>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p>○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및 선진작목반(공동이용시설에 한함),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p>	<p>○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객토희망농가, 선진작목반(공동이용시설에 한함),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농산물가공공장사업자 및 농기계생산업자</p>	<p>○ '04년 종합자금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지원대상자(계속)</p> <p>* 지원제의 대상자</p>	<p>(신 설)</p> <p>(신 설)</p> <p>○ 해당사업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p> <p>(신 설)</p> <p>-종합자금대출잔액(금차 지원액 포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 회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영체</p> <p>(신 설)</p>	<p>※'04년 후계농업인 사업은 시장·군수가 선정·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의 배정 기준(업체규모별, 농기계 종류별)은 농기계협동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름</p> <p>-농산물가공산업은 농가공동의 생산자단체,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지정업체, 일반업체를 지원</p> <p>○ 해당사업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p> <p>-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p> <p>- 다만, 인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신청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투자·출연기관재직자는 제외)</p> <p>○ 다만,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예외로 함</p>	<p>○ '04년 후계농업인 기 선정</p> <p>○ 농산물가공산업 지원대상자 명확화</p> <p>○ 겸업이 가능한 인삼, 미작분야 및 농기계구입 자금은 해당사업외 별도의 직업이 있어도 지원 가능</p> <p>○ 회계장부 기록농가의 회계교육 이수 의무 면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2)지원조건</p> <p>○지원자금의 종류</p>	<p>○지원자금의 종류</p> <p>-원예특작·축산·농촌관광분야 : 시설·개보수·운영자금과 농기계자금을 종합지원</p> <p>-기타분야 : 개보수·운영·농기계자금을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지원자금의 종류</p> <p>-시설자금:원예특작, 축산·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p> <p>-개보수자금: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객토자금</p> <p>-운영자금: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기계생산지원(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지원 등), 농촌가공산업육성(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p> <p>*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지원</p> <p>·농기계 사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대비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토록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신기술농기계 개발보급 등 우량농기계생산도 지원</p> <p>*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p> <p>·농업용기계생산지원 및 농업용기자의 생산시설 설치비, 건축비 지원(다만, 부지구입비는 제외)</p>	<p>○자금종류별 지원분야를 구분·명확화</p> <p>○분야별 지원가능자금 등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보충설명</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2)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종류 (계속)		* 농촌가공산업육성 · 우리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고유식생활문화 계승발전 및 특산품생산단지 조성·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업(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조건	* 원예특작은 3년거치 10년균분상환, 축산,철골(유리 혹은 경질)온실,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이내 상환(단,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거치 일시상환) · 농기계자금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3년거치 10년균분상환 (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재재생산지원, 농촌가공공장신규시설 사업),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후계농업인육성사업) · 운영자금 : 2년이내 상환(단,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거치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1년이내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지원조건을 종합자금지원체제로 개편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기존상환조건 유지 ○ 농기계구입자금은 기존상환조건 유지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자금용도	(신 설)	-시설자금 : 첨단농업기 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 설지원 -개보수자금 : 객토	○ 신규편입사업 반영
-개보수자금	*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 (한우, 착유우 모두 암송아 지, 육성우만 해당)는 고정 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 자금에 준하여 지원	* 번식용 한우암소(한우, 암송아지, 육성우만 해 당)는 고정자산으로 간주 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 여 지원	○ 원유과잉으로 인해 착유우 지원중단
-운영자금	(신 설)	*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 의 생산원자재구입자금 을 지원	○ 운영자금에 농 기계생산원자 재구입자금 포 함
-농기계자금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격 30백만원이상의 정부지원대 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 금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 격 20백만원 이상의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	○ 20백만원 이상 농기계구입자 금이 종합자금 으로 편입
4)사업담당부 서	(신 설)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02) 500-1682~83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02) 500-1849~50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정 책과 (02) 500-1805~06 식량생산국 농업기술지원 과 500-1788~89	○ 신규편입사업 담당과
다.자금지원결 정 2)자금지원결 정	* 운영자금,개보수자금,농기계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	*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구입·생산지원자 금, 객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시·군에 의견조회 를 하지 않음	○ 인·허가가 필 요없는 사항의 경우 시·군의 의견조회 대상 에서 제외 * 후계농업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인·허가 필요
3)심사방법 <신용평점평 가지 우대 혹은 가점부 여 고려사항 >	(신 설) (신 설)	-방역차원에서 종돈시설과 정액시설을 분리 또는 이 전하는 축산경영체에 대한 지원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주관하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농업경영체 -가축예방활동참여 우수농 가(중돈장을 전염병 청정 지역으로의 이전지원 포 함)	○ 농가 방역을 목 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 하는 경우 우대 ○ 축산물우수브 랜드 집중육성 ○ 중돈장은 일반 양돈장보다 더 욱 세심한 관리 가 요구됨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6. 세부사업내용 <축산분야> 나.사업추진시 유의사항</p>	<p>-기타 :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등</p> <p>(신 설)</p>	<p>-기타 : 집유일원화참여, 축산분뇨자원화처리, 객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 농업경영정보 제공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p> <p>○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은 납유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p>	<p>○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및 농업 통계조사대상 농가의 인센티브 마련</p> <p>○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지원시 납유처 확보 농업인에 대해 지원</p>
<p>6. 세부사업내용 <농기계분야> 나. 유의사항</p>	<p>○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중에 공급가격 3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p> <p>○ 30백만원 미만인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에서 제외</p> <p>○ 30백만원이상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자금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 사항중 본지침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p>	<p>○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중에 공급가격 2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p> <p>○ 20백만원 미만인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에서 제외</p> <p>○ 20백만원이상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자금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 사항중 본지침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p>	<p>○ 20백만원 이상 농기계구입자금 신규편입</p> <p>"</p> <p>"</p>
<p>42. 후계농업인육성 ① 창업농지원사업 ○ 사업명시 ○ 사업명칭 ○ 지원대상자</p>	<p>(신 설)</p> <p>① 후계농업인육성</p> <p>2) 지원대상자 <신규후계농업인>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이하생략)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이하생략)</p>	<p>* 이 사업은 '03년까지의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을 승계하여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p> <p>① 창업농지원사업</p> <p>2) 지원대상자 <삭 제> <삭 제></p>	<p>○ 창업농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p> <p>○ '04.부터 창업농지원사업으로 개편</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지원단가 <신규후계농업인>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 농설계에 따라 20 ~ 50백만원 까지 차등지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 농설계에 따라 20 ~ 100백만원 까지 차등지원</p> <p>○ 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 대상자 심의·추천 -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장 은 평가 다음에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 수가 신규후계농업인의 경 우 360점, 취농창업후계농 업인의 경우 300점 이상된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 등 에 추천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대상자 순위결정 - 시장·군수 등은 읍·면장 등이 ...(중략)...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순위부여 ○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우선선 정...(이하생략)</p> </p>	<p>○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군수가 시·군농정계선 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 농업인육성대상자로 농발·확정한 자 <자격요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산 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 행년도 1. 1일 현재 35세미 만인 자중 ①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 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2001년도 이전에 산업 기능.....중략.....영농에 종사(예정자포함)하는 자</p> <p>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 ~ 100 백만원까지 차등지원</p> <p>1) 추천기준 ○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장 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 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 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p> <p>※ 낙농분야 후계 농업인 신 청자 중 납유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심의·추천 대상 에서 제외 <삭 제>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p>○ 신규·취농창업 후계농업인 폐지,로자 창농업대 상 지원단 일화</p> <p>○ 신규·취농창업 후계농업인 폐지에 따른 지원단 가 단일화</p> <p>○ 창업농 중심 사업단 구 일화 정 수</p> <p>○ 감사원 지적 사항 반영</p> <p>○ 중복규정 삭제</p> <p>○ 중복규정 삭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평가기준</p>	<p><신규후계농업인 평가기준>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교육훈련 ... (이하생략) ○ 영농사업계획(비고란)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지 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 분야 지도공무원, 농업계 대학 지도교수 등의 조 인 또는 민간 컨설팅업 체의 컨설팅을 받은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지원</p> <p>○ 가점사항 -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업 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 우 총점(500점)을 초과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여성의 경우 총점(500 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 산</p>	<p>○ 창업농으로 평가 기준 단일화</p> <p>○ 지도교수의 조 인도 활용 가 능토록 확대</p> <p>○ 전문업 체 의 컨설팅을 받 도록 유인</p> <p>○ 여성의 농촌 정착 유도</p>
<p>○ 우선순위</p>	<p>2) 선정시 우선순위 <신규후계농업인>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 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 지자 순</p> <p><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동점일 경우에 한하여 전 세 대 이주가 확인된 자를 취농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정</p>	<p>2) 선정시 우선순위</p> <p>○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 가한 종합점수가 동점 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 성, 산업기능요원 편 입자, 농업계학교 출 신자, 관련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순 으로 우선 선정</p>	<p>○ 창업농 중심 으로 우선순 위 단일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 대상자 심의 추천	<p>가) 대상자 심의·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농업기술센터(이하 “읍·면 등”이라 한다) 심사위원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규 후계자와 취농창업후계자로 구분하여 검토 평가하고...(이하생략) 	<p>가) 대상자 심의·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농업기술센터(이하 “읍·면 등”이라 한다) 심사위원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사업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용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300점 이상인 자)만 관련 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취농창업구분 폐지에 따라 심의 및 추천기준 단일화
○ 대상자 순위 결정	<p>나) 대상자 순위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등은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중략)..... - 시장·군수 등은 2001년 이전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중략).....지원될 수 있도록 함 	<p>나) 대상자 순위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신규후계농업인 관련 규정으로 삭제(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해 지원가능)
○ 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실시 등 ※ 후계농업인이 사업자금(용자금)을 당해연도에 용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자금을...(이하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실시 등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예외)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농전 졸업자는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후계농업인 선정이 가능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삽입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도 후계농업인이므로 자격상실요건이 동일,상기규정과 중복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교육훈련</p>	<p>1) 교육훈련 <삭 제, 신 설></p>	<p>마. 교육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공통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교육 대상자(품목별)선발, 교육 일시·장소 등 통보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교육표 삽입 지침원본참고] - 현장실습교육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자체실습시설을 활용하거나, 선도농장·농과계학교·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인은 현장실습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전문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 중 자영농과) 졸업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보·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통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사실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p>○ 창업농 중심의 지·차별 단·일화 및 교육체계 변경 등을 반영 새롭게 개편</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 사후관리	<p>○ 시장·군수 등은 후계 농업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지 3년이 내인 자는 매년,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 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p> <p>- 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p>	<p>○ 시장·군수 등은 후계 농업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지 3년이 내인 자는 매년,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p> <p>- 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5년까지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p>	<p>○ 시·군 담당자의 업무 과중 해소</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 사후관리	<p>(신 설)</p> <p>- 시장·군수 등은 자금 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p> <p>(신 설)</p>	<p>※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선정후 6년이 경과하면 후계농업인 관리카드의 일부항목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생략가능 항목은 별지 제5호서식 참조]</p> <p>- 시장·군수 등은 자금 지원 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p> <p>※ 경영우수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대장자로 우선 선정·지원</p>	<p>○ 시·군 담당자의 업무 과중 해소</p> <p>○ 경영컨설팅과 연계 후계농업인 정착 지원</p>
○ 사업취소사유	<p>-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중략)……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p> <p>(신 설)</p>	<p>-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중략)……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p> <p>※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p>	<p>○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율을 허용 부업의 명확화</p>
○ 후계농업인의 교체	<p>가) 후계농업인의 교체</p> <p>○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연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중략)…… 교체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p>	<p>가) 후계농업인의 교체</p> <p>○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연도 9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자에…(중략)…… 교체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p>	<p>○ 교체후 사업대상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체시기 조정 (11월말 → 9월말)</p>
○ '05년도 사업신청	<p>가. 신청서 제출기관</p> <p>○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후계농업인 심의·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품목별 생산자단체</p>	<p>가. 신청서 제출기관</p> <p>○ 영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p>	<p>○ 사업대상 축산·수산물 생산자단체는 신청기관에서 제외</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나. 신청자격 <신규후계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 (이하생략)</p> <p><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 (이하생략)</p>	<p>나. 신청자격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연도 1월1일 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으로서, -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01년도 이전에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p>	<p>○ 창업농 중심으로 신청자격 단일화 - 종전의 농업계학교 졸업후 5년 미경과자, 기타 학교 졸업자 중 4년미만의 영농종사자를 독립하여 영농종사 후 5년 미경과자로 통일</p>
<p>②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사업비 집행기준 중 차량유지비 한도</p>	<p>○ 유류비 월 12만원 수리비 월 10만원</p>	<p>○ 유류비와 수리비를 합하여 연간 300만원</p>	<p>○ 경상 운영비율 집행기준을 일부 완화</p>
<p>43. 농업인자녀 지원</p>			
<p>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p>			
<p>○ 지원대상</p>	<p>○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p> <p>○ 경지소유규모 10,000㎡ 미만</p>	<p>○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농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p> <p>○ 경지 → 농지</p>	<p>○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용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p> <p>○ 법률 용어로 정비</p>
<p>○ 제외대상</p>	<p>○ 대지, 건물 기준 재산이 170백만원 이상</p> <p>○ 국가, 지자체, 학교,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또는 면제)받고 있는 경우</p>	<p>○ 대지 → 토지로 변경 *신청서에는 토지로 명시되어 있음</p> <p>○ 성적우수장학생 등 학업장려 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음</p>	<p>○ 규정 신설 당시의 취지에 맞게 의미 명확화</p> <p>○ 제외대상 명확화</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농지소유규모 및 기준재산 산정기준	○신청인 이외에 가 구원 소유 농지 및 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생계 및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농지 및 재산은 합산	○자격 제한의 취지가 영세가구의 구분에 있 는 점을 감안, 규정 명 확화
○지원금액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 교의 급지별 구 분에 따른 수업 료 및 입학금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당 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 당해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시·도교육감이 정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는 특목고 지원 근거 마련
○반환기준	(신 설)	○잘못 또는 자격상실시 학 자금 반환기준 명시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 한규칙(교육부령)준용	○잘못 또는 자격상실시 학자금 반환기준 명시
○농업인기준표	○지원 대상 상한 규정	○지원대상 상한 이외에 농 업인의 기본 요건(농업농 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요건)도 규정	○지원대상 자격 요건 명확화 (기준표에 지원대상 요 건 망라)
○신청절차	○지원신청서를 12 월말, 6월말 2회 제출	○12월말 1회로 간소화(재 학여부 분기별 확인), 신 규자 수시신청 가능	○절차 간소화 및신규자 수시 신청 근거 마련
②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지원단가 및 일수	○3,090원/1인 1일 ○지원일수 : 260일	○3,090원/1인 1일 ○지원일수 : 260일 <단서 신설> -국고예산 집행기준으로만 적용 (지방비 집행은 단가 및 일수 초과 가능)	○양질의 급식을 위해 기준단가 및 일수를 초과하는 지방비 추가 지원 허용
○보조율	○국고20%, 지방비 50(도비30,교육청 20),자부담30	○지방비 50→60 -교육청 20→30 ○자부담 30→20	○자영수산고생 급식비 지원기준과 통일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44. 농업경영컨설팅지원</p>	<p>2. 시책 및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기관·업체 ○ 가공업체의 경영혁신 방안 <p>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 (2) (생략)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당 평균 8.5백만원 <p>나. 사업비(예산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670개소, 5,696백만원(국고 1,709, 지방비 1,139, 자부담 2,848) <p><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 ○ 시·군과의 협조 <p>다. 경영대상 경영체 선정 및 공급업체 지정 (1) 컨설팅대상 경영체 선정 1) 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당 평균 7.5백만원 ○ 사업량 873개소, 6,550백만원(국고 1,965, 지방비 1,310, 자부담 3,275) <p>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는 ----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리 ○ 위의 경영체의 혁신 방향과 중복 ○ 2004 예산단가 ○ 사업주관기관을 시·도지사에게서 시장·군수로 조정 ※ 이하 같음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정보화교육 3일 이상 이수 (신 설) <p>2) 선정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이상 기록한 경영체 (신 설) ②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③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로서 지도계통 ----- ④ ~ ⑤ (생략) ⑥ 컨설팅계약분야가 많은 경영체 ⑦ 정책자금지원경영체 ⑧ 인터넷계정이 있거나 AFFIS회원 ⑨ 경영규모가 큰업체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장부와 영농일지를 최근 1년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신규창업농 도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농립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인 경영체 ②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영체 ③ 지도계통 ----- ④ ~ ⑤(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현행과 같음 <p>※ 시장·군수는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정에 맞게 분야별 균형지원을 위하여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편의도모 ○ 경영장부와 영농일지 작성을 신청자격요건으로 지정 ○ 자격요건으로 지정 ○ 선정요건을 강화 ○ 정책자금을 포함 ○ 용어정리 ○ 경영관리 우선 ○ 순위상향 조정 ○ 선정요건 강화 ○ 분야별 균형유지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2) 컨설팅공급기관·업체 등 지정</p> <p>1) 지정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4인(농산물가공분야는 1인)이상 보유한 민간기관(대학포함 이하 "기관"이란 대학을 포함함). 업체 또는 4인(농산물가공분야는1인)이상의--- ○ 인터넷 또는 AFFIS를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급업체 ○ 외부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단, 가공분야는 제외) ○ ---컨설팅 공급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 , - , - (생략) - 선도농업경영체의 경영주 <p>2) 지정우선순위</p> <p>3) 지정절차(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공급업체 지정 :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컨설팅공급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과 지정 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팅공급업체를 지정 	<p>2) 컨설팅 공급업체지정 : 시·도지사</p> <p>1) 공급업체 지정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4인 이상 보유한 민간기관(대학포함)업체 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경영분야 1명이상포함)으로 구성된 전문가팀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중인 공급업체 <단서삭제> ○ -----공급업체 (현행과 같음)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도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삭 제> (현행과 같음) - ---공급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을 갖춘 공급업체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분야도 전문인력을 4인으로 강화, 경영분야 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의무화 ○ 공급업체 요건강화 ○ 가공분야 공급업체요건을 강화 ○ 조문정리 ○ 공급업체요건만 맞으면 모두지정 ○ 요건을 갖추면 모두지정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자문회의를 구성한 경우 별도로 시·도의 농정심의회를 거치지 않음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만 맞으면 모두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기관 업체를 직권으로 추가지정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만 맞으면 모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경영체에 공급업체의 소개서를 서신으로 발송,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에 게재, AFFIS에 게시, 지정 결과 농림부에 보고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설명회를 통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수요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공급업체를 각각 심사할 수 있음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만 갖추면 모두 지정
	<p>4) 공급업체는 각종행사에 참여해야 함</p>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불필요
	<p>라. 사업시행</p>		
	<p>(1) 계약체결</p>		
	<p>1) 설명회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불참 경영체는 선정 제외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편의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생략) 	<p>(현행과 같음)</p>	
	<p>2) 계약체결 및 계약승인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p>- 공급업체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공급업체는 	<p>- 시장·군수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 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로조정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차 이상 지원경 영체는 재무제표 제출 ○ 계약체결건수 제한 - 1개 컨설팅공급업체는 1개 시·도 당 30건 이내, --- 전국 총계약 건수 60건 --- 단, 시·도지사는 수행능력을 감안 하여 상한의 제한 없이 체결가능 (2) 지원금액결정 및 계약의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결정 : 시·도지사 ○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설명 (3) 계약의 무효·해 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의 무효 2) 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지권자 : 시·도지사 3) 계약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가 시·도 지사에게 제출 4) 사업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 선집행 ○ 보조금 동률 집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회이상 ----- - 1개 공급업체는 전국 총계약건수 80건 ----- <li style="text-align: center;"><단서삭제> ○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 <li style="text-align: center;"><삭 제> <li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 ○ 해지권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에게 --- <li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 <li style="text-align: center;"><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리 명확화 ○ 시·도건수 제한 폐지, 공급업체에 대한 총계약 건수는 확대 ○ 시장·군수가 사업을 추진 ○ 별도규정 불필요 ○ 시장·군수가 사업추진 ○ 시장·군수가 시행 ○ 농림사업자 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자부담 선집행)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름 <자부담 선집행의 경우> · 계약금, 중도금, 잔금 	<p><삭 제></p> <p>(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집행 규정 삭제
	<p><보조금 동물 병행지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중도금, 잔금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동물 집행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시장·군수
	<p>(5) 추진일정(별표 5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게시 공고 및 사업참가 신청 - 규정게시 공고 - 신청서 제출기관 - 제출서류 	<p>(5)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가 신청 : 당년 1월 말까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제출서류 · 홈페이지 구축운영현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정리 ○ 공급업체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대상경영체 선정 : 2003.2월말까지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가 선정 ○ 컨설팅 공급업체 지정 : 2003.2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대상경영체 선정 : 2004.2월말까지 - 시장·군수가 선정 및 시·도에 보고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공급업체 지정 : 2004.2월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관 시장·군수 - 심사기한 삭제
	<p><보조금 동물 병행지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중도금, 잔금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동물 집행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절차 : '03.10.31 이내에서 수시로 하되, 계약 종료는 '04.6.30 - 설명회 개최 - 시·도지사가 지원금액 결정 (6) 종합자금 경영체 우선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2)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가사업비 정산 바. (생략)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기간은 1년 이내, 계약발효일은 '04.6.30(예산추가 배정에 의한 추가계약, 기존계약자의 유고 등으로 대체계약 체결시에는 2004.10.31이내, 계약만료일은 '05.6.30 이내로 함) <삭 제> - 시장·군수가 지원금액 결정 <삭 제> (현행과 같음) (1) ---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사업비 정산 (현행과 같음) (1) -- : 시·도지사(시장·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정리 ○ 라, (1), 1) 과 중복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 경영체 지원 우선 순위에 반영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 관리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컨설팅계약기간중 쌍방점검, 계약기간 종료후 1년 동안 지원대상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연도말을 기준으로 점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2)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3) 추가상황 및 경과보고 ※ 공급업체는 농진청 진단표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진단서식 활용 (4) 사업취소 1) 개별계약의 지원결정 취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취소 ○ 보조금을 타목적으로 사용시 자금회수, 3년간 자격 제한</p>	<p>(1) —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협조를 얻어 계약기간 중 쌍방점검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 공급업체는 농진청 진단표서식 활용 (3) (현행과 같음) ○ 시장·군수가 취소 ○ 보조금 타목적으로 사용시, 자부담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은 경우 자격제한</p>	<p>○ 계약종료 후 사후 관리는 이행이 곤란 ○ 시장·군수가 사업추진 ○ 인터넷홈페이지 구축강화 ○ 진흥청 서식으로 일원화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 자부담집행의 투명성 제고</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공급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 자부담을 받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후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제한 <p>나. 보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농림부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선정결과 - 공급업체 지정결과 - 계약체결 상황 - 추진상황 중간보고 - 추진실적보고 ○ 시·도지사가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얻어 사업시행 차기년도 경영체별로 평가 ※ 모든 컨설팅공급업체는 자체 E-mail--- <p>6. 2004년도 사업선정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이를 되돌려준 경우, 컨설턴트 경력, 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공급업체지정 취소 및 전액회수하고, 향후 공급업체 지정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E-mail--- <p>6. 2005년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제> <p>가. 신청서 제출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 시·군 농정과, 산업과 ○ 공급업체 : 시·도 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농업특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실적보고로 같음 ○ 시행에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 자격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안내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별표1] 예산배정내역 [별표2] 컨설팅서비스의 분류 - 분야별 세부내용 예시</p> <p>[별표3] 필수사항 [별표4] 대금지원 약정서 [별표5] 생략</p> <p>[별지서식 1] 수행계획서 [별지서식 2] 경영체 실태조사표 [별지서식 3] 이행확인서 [별지서식 4-1] 공급업체 신청서</p> <p>[별지서식 4-2] 전문인력 보유현 황 [별지서식 4-3] 실적기술서 [별지서식 6-3] 공급업체 지정결 과 [별지서식 7] 정보화교육이수확 인서 [별지서식 8] AFFIS 이용실적 확인서 [별지서식 9-1], [별지서식 9- 2] 컨설팅 일지 [별지서식 10-1] 추진상황 보고 [별지서식 10-2] 계약체결상황보 고 [별지서식 10-3] 중간실적보고 [별지서식 11] 추진실적보고 [별지서식 10-4] 결과요약보고</p>	<p>나. 신청서 제출기한 ○ 경영체('04.1.31까지) → 시장·군수('04.2.15까지) → 시·도지사 ○ 공급업체('05.1.31까지)→ 시·도지사</p> <p>다. 신청자격 등 ○ 경영체 및 공급업체의 신 청자격, 선정절차, 지원기 준은 현행과 동일 (현행과 같음) ○ 컨설팅서비스분야 및 세 부내용 예시로 일원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p> <p>[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삭 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삭 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p>	<p>○ 본문추진일 정에 명시</p> <p>○ 본문 조항 삭제</p> <p>○ 본문 조항 삭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45. 농업 직접 지불제</p> <p>① 경영이양직 접지불</p> <p>○ 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p>	<p><사업시행요령></p> <p>가. 사업내용</p> <p>○ 연령</p> <p>-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5세이상 75세이하인 자(2003년도의 경우 1928년 1월 1일 ~ 193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p> <p>○ 영농경력</p> <p>-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부터 3년전인 날이 속하는 연도(2003년도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그 기간중 벼를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p> <p>○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상 장애나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년중 1년이상 벼를 경작한 농업인</p> <p>○ 지급요건</p> <p>-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의 모두를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도 포함</p>	<p><사업시행요령></p> <p>가.사업내용</p> <p>○연령</p> <p>-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2004년도의 경우 1935년 1월 1일 ~ 194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p> <p><단서조항삭제></p> <p>○ 영농경력</p> <p>-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 10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경작한 것으로 본다.</p> <p>(단서신설)</p> <p>○ 지급요건</p> <p>-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의 모두를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55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농업인</p>	<p>○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제도 도입에 따라 고령농의 효율적인 영농은퇴를 위하여 지급연령제한</p> <p>○ 사업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조항 삭제</p> <p>○ 일정기간 영농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명예퇴직금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벼농사경작을 10년이상으로 합</p> <p>○ 단서조항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수령만을 위한 신규진입자 예방</p> <p>○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경영이양처리기간 단축 및 소유농지처리방법명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2001년 12월 31이전에 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시·군농정심의회에서 확정된 자</p> <p>◦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답</p> <p>-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답</p> <p>-지적법상 지목이 답이며, 실제 벼를 경작하고 있거나 경작할 수 있는 답</p> <p>◦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답(휴경답)은 제외</p> <p>-농업진흥지역내의 답(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밖의 답 포함)</p> <p>-영농규모화사업 대상자가 매입 또는 임차를 원하는 영농규모화 사업의 대상 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답</p> <p>-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답</p> <p>◦ 지목이 답이 아닌 경우 읍·면사무소의 실경작증명서(확인서)첨부</p> <p>※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답(휴경답)은 제외하되, 쌀생산조정제 신청농지는 생산조정제 계약 해지 후 신청가능</p> <p>-공사에 임대이양중인 답은 당해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할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p> <p>◦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p> <p>-농경영규모 2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다만, 쌀전업농으로 육성가능성이 인정되는 신규 취농 농업인, 후계농업인이 있는 농업인은 후계농업인을 쌀전업농으로 선정한후 지원가능, 50세미만 농업인 경우는 농경영규모2ha미만농가도 지원가능.</p>	<p>◦ 지원대상 답의 지원 조건 명시</p> <p>◦ 임대차사업에 의하여 기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1회 재계약허용하여 원활사업 추진</p> <p>◦ 양수대상자 명시로 효율적인 사업추진도모</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기준 - 지급단가 : m²당 289원 (ha당 289만원)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 면적(m²) × 289원 ※ 필지별 지급액 합계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지급액 상한 : 1,5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기준 - 지급단가 ◦ 농지매도: m²당 289.6 (ha당 2,896천원/연) ◦ 농지장기임대: m²당 297.7원 (ha당 2,977천원/1회지급)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m²) × 지급단가 ※ 필지별 지급액 합계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지급액 상한 : 2.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사업 및 임대차사업지급 기준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우선순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신청시기 ◦ 다음기간내에 신청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신청기간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의한 경영이양보조금분할 지급명시 ○ 사업의 연중 실시 명시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의뢰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지급대상자 선정을 의뢰</p>	<p>○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지사별)에서는 자체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의결사항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위원장은 공사 지사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p> <p>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인 이내 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 2인 이내 ③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대표 5인 이내</p> <p>-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1인을 둔다.</p> <p>○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별지 제4호서식)</p>	<p>○ 공사자체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방법 명시</p> <p>○ 심의회 절차 및 예산범위 규정</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별지 제4호서식)</p> <p>-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대상자 선정에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지급예정액이 당해 지역에 배정된 예산액의 10%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 지급대상자 선정</p> <p>-지급대상자 및 농지 확인</p> <p>◦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지급대상자 선정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는 공사에서 제출된 서류의 검토와 농지원부의 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적격여부를 확인</p> <p>○ 농정심의회 심의 및 선정</p> <p>-시장·군수는 확인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경우 자체 심의기구 구성)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p> <p>◦ 공사로부터 선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야함</p>	<p>-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보조금지급 우선순위 및신청순서를 고려하여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 추진 다만 보조금지급 예정액이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 지급대상자 선정</p> <p>- 지급대상자 및 농지 확인</p> <p>◦ 공사 지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농지원부의 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적격여부를 확인</p> <p>○ 심의회 심의 및 선정</p> <p>-공사 지사장은 확인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자체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p> <p>◦ 지사장은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야함</p>	<p>○ 신청서 확인 절차 명시</p> <p>○ 농정심의회 대신 공사자체 심의회로 변경됨으로 절차 정리</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대상자 선정 공고 및 통 보</p> <p>-시장·군수는 선정된 지급대상자 명단을 14 일 이상 공고하고 농업 기반공사 지사장에게 통보(선정에서 탈락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 도 함께 통보)</p> <p>○선정결과 개별통보</p> <p>-시장·군수로부터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 보받은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모든 신청인 에게 그 결과를 통보 (별지 제5호서식)하고 지급약정체결을 안내 (탈락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명기하여 통보)</p> <p>○경영이양보조금 지급</p> <p>-지급시기 : 지급약정 체결 후</p> <p>-지급방법 : 경영이양 보 조금 지급대상자가 신고 한 예금계좌에 입금지급</p>	<p>○대상자 선정 공고 및 통 보</p> <p>-지사장은 선정된 지급 대상자 명단을 14일 이 상 공고(지사 게시판)하 고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p> <p>○선정결과 개별통보</p> <p>-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모든 신청 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별지 제5호서식)하고 지급약정체결을 안내(탈 락자에 대하여는 그 사 유도 명기하여 통보)</p> <p>○경영이양보조금 지급</p> <p>- 지급기간</p> <p>◦매도이양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부터 만 70세까지, 매월 분할지급</p> <p>◦임대이양 : 농지임대 계약체결 후 1회지급</p>	<p>○경영이양직불사 업 개편에 따라 보조금지급기간 및 지급 방법명 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신 설)	<p>-지급시기: 지급약정체결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일자 : 매월 25일(매도이양의 경우에 한함) ◦ 지급방법 <p>경영이양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해부터 매월 25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지급.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토요일인 경우에는 지급전일에 지급</p> <p>○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지급</p> <p>-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을 2년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중단, 보조금 수령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보조금 수령기간이 2년되는 달까지 보조금 지급.</p> <p>-보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지체없이 농업기반공사 해당지사 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사에서는 수령자를 대체 조치한 후 보조금 지급</p>	<p>○ 보조금 수령자의 사망시 보조금 지급방법 및 사망확인 명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 관리 ◦ 조사시기 :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 조사대상 : 당해년도 6월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 및 농지 ◦ 조사내용 (신 설) ◦ 조사방법 (신 설) ◦ 사후관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 해지사유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보조금수혜자 관리 ◦ 조사시기 : 매년 9월 30일까지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 및 농지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사망 여부(매월 사망확인) - 추곡약정수매현황 또는 논농업직불 약정현황 ◦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 ◦ 사후관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이양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만료일까지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 해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수령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와 상속인에게 지급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조금수령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시기를 영농규모화시기와 일치 ○ 사후관리 명시 ○ 보조금수령자의 사망시 계약해지사유명시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약정 해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시 반환금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약정 해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시 반환금액 산정(농지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직불사업 개편에 따라 임대차사업 보조금 환수방법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약정 해제의 사유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상의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경영이양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약정 해제의 사유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과 연결된 소유답은 1년 이내에 그외 소유답은 3년 이내에 경영이양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경영이양의 해제 방법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치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 ○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과 연결된 소유답은 1년 이내에 경영이양하고 그 외의 소유답은 3년 이내에 경영이양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수령자의 사망이후 보조금은 반환 조건명시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④ 쌀생산조정제</p> <p><input type="checkbox"/> 약정체결자 변경</p> <p><input type="checkbox"/> 약정농지 일부 약정 해지</p> <p><input type="checkbox"/> 이행 상황 점검 방법</p> <p>46. 농작물재해보험</p> <p>1. 사업실시지역</p>	<p>○ 지급약정해제에 따른 보조금 환수 - 반환금액 계산방법 : 기 지급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 부과</p> <p>○ 읍·면장은 약정을 승계 받는 ... 보고</p> <p>○ 약정이 체결된 대상농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 매년 1월중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당초 사업신청 접수 기관장에게 해지 신청 가능</p> <p>○ 농업기반공사장(지부장)은 시·군에서 통보 받은 생산조정 약정 농지에 대하여 7~9월중 약정 이행 여부 점검</p> <p>○ 포도·단감·감귤·복숭아 : 주산지 중심</p>	<p>○ 지급약정해제에 따른 보조금 환수 - 매매사업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자가 계약해제 등으로 가산금을 부과하여 환수할 경우에는 기지급 받은 보조금의 총액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환수조치 - 농지임대이양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은자가 계약해제 등으로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지원금 총액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환수조치</p> <p>○ 좌 동 * 약정체결을 승계하는 자는 사업신청자격자의 자격을 갖춰야 함</p> <p>○ 약정이 체결된 대상농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 해당년도 사업신청접수기간중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당초 사업신청 접수 기관장에게 해지 신청 가능</p> <p>○ 농업기반공사장(지사장)은 시·군에서 통보 받은 생산조정 약정 농지에 대하여 7~10월 15일중 약정이행 여부 점검</p> <p>○ 전국 확대 - 포도·단감·감귤·복숭아</p>	<p>○ 가산금 부과시 기 지급금에 대한 1할가산금 부과 명시</p> <p>* 약정체결 승계자의 자격을 명시</p> <p>* 약정농지 일부 약정해지 신청기간을 사업신청 접수기간으로 명시</p> <p>* 약정이행 현장 점검기간을 15일 연장</p> <p>○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포도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사업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사과·배는 '03년도에 전국 확대)</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47. 농가도우미지원</p> <p>○ 지원절차</p> <p>48.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p> <p>①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p> <p>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p> <p><추진체계></p>	<p>○ 농가도우미 이용신청 → 도우미 이용계약 → 영농일지 작성 → 도우미지원금 청구 및 지급</p> <p>가. 사업내용 (2) 사업대상자 ○ 관광농원사업 : 농업인, 농기공, 농협, 산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p> <p>※ 공동참여방법 : 농원 조성·운영 및 작목임식, 부대·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품 등의 판매, 현물출자등</p> <p>(3) 지원규모 및 조건 ○ 관광농원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자금 또는 개보수자금 용자 ○ 농촌민박 : 농업종합자금의 개보수자금 용자</p> <p>라. 사업시행 (1) 농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학계, 협회, 전문연구기관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 농가도우미 이용신청 → 도우미 지원금 청구 및 지급</p> <p>가. 사업내용 (2) 사업대상자 ○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3) 지원규모 및 조건 ○ 관광농원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용자 ○ 농촌민박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개보수 자금 용자</p> <p>라. 사업시행 (1) 농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승인 <삭 제></p>	<p>○ 지원절차의 간소화로 이용농가의 불편이 해소 및 이용 활성화</p> <p>법적근거 미비로 삭제(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대상자에 한함)</p> <p>농업종합자금 지원기준</p> <p>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사업시행지침에서 삭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②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p> <p>5.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 2)지원대상</p>	<p>(신 설)</p> <p>①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20호이상인 마을로서 전체가구의 1/3 또는 10호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p> <p>②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 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각 마을의 가구수 합계가 30호이상이고 협정에 참여하는 각마을은 마을 전체가구의 1/3 또는 5호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하여야함</p> <p>※ 공동마을협정은 동일 읍·면지역내의 마을간 협정이어야 함</p>	<p>-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p> <p>①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20호이상인 마을로서 전체가구의 1/2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p> <p>②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 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각 마을의 가구수 합계가 30호이상이고 협정에 참여하는 각마을은 마을 전체가구의 1/2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하여야함</p> <p><삭 제></p>	<p>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사업승인시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함</p> <p>○ 지원대상마을의 주민참여 비율 상향조정 (1/3→1/2)</p> <p>-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제고</p> <p>○ 상 동</p> <p>○ 인접한 타면의 마을도 참여 허용토록 완화 - 특색있는 권역 개발의 애로 요인 해소</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3) 지원조건</p> <p><추진체계> 라. 사업시행세부절차 1) 체험마을 지정신청</p> <p>2)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천</p>	<p>○ 컨설팅 비용 (5백만원 까지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시장·군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추진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관내농협의 담당직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마을의 협정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p> <p>[예시] ①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②시·군 인터넷 사이트에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 지원 ③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투입 ④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공공시설, 유희시설 활용 우대</p>	<p>○ 컨설팅비용(10백만원 까지 인정)</p> <p>○ 자금용도 도표상에 '교육 훈련·홍보비등'내역 추가 ○ 시장·군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추진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을 통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 하고, 신청마을의 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p> <p>※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세부사업별 법률적 문제검토서 첨부 제출 [의무포함사항] ①농업 기술센터 담당직원 마을 배치계획 ②시·군 인터넷 사이트에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지원 ③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마을 주민 교육방안 ④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공공시설, 유희시설 활용 우대</p>	<p>○ 컨설팅기능 보강을 통한 안정적 사업 정착 유도 ○ 교육 및 홍보비 사용 예시 ○ 정확한 권리 관계의 실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추진 애로 요인 사전제거</p> <p>○ 상 동</p> <p>○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3) 최종마을 선정</p>	<p>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⑦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지원등</p> <p>○ 마을심사위원회는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후 필요시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p>	<p>[권장포함사항]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⑦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지원등 ⑧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현행 ①과 같음) 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투입(현행 ③과 같음)</p> <p>○ 마을심사위원회는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 농업기술센터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후 사업계획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p>	<p>○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강조 ○ 사업계획설명회 및 현지 실사의 의무화</p>
<p>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p>	<p>(신 설)</p> <p>(신 설)</p>	<p>○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p> <p>- 해당 사업비의 비목은 '자금용도'부문 참조</p> <p>-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p>	<p>○ 사업비 정산의 정확성 제고</p> <p>○ 기본규정 추가 삽입</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및 사후 지원, 행정사항</p>	<p>○ 사후관리 (신 설)</p> <p>-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통음식개발, 향토맥 잇기사업, 주민 교육등 기술지도 실시</p>	<p>○ 사후관리 -시·지사와 시장·군수는 점검에 의한 매분기말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 집행현황을 익월 10일 까지 보고</p> <p>-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통음식개발, 향토맥 잇기사업등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지정된 체험마을에 대한 교육, 전담직원 배치등 사후 관리 실시</p>	<p>○ 적극적 사업 추진독려</p> <p>○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강조 (교육·지도분야)</p>
<p>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p>	<p>○ 사후지원 (신 설)</p>	<p>○ 사후지원 -1년단위 평가를 실시 하되, 체험마을 지정후 3년간의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해 추가지원(세부지원 내역은 별도결정시달)</p>	<p>○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p>
<p>나. 신청자격</p>	<p>(신 설)</p>	<p>○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p>	<p>○ 친환경농업 실천 유도</p>
<p>다. 사업추진절차</p>	<p>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마을에서는 농촌 체험마을 추진의향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정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p>	<p>다.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의향서 및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제출 (마을→시장·군수):2004.1.15일까지 ○ 마을추천(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부):2004.3.31일까지 ○ 녹색농촌체험마을 잠정지정: 2004.10월말</p>	<p>○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추진일정 조정</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바. 기타사항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 사항에 농촌관광 관련 분야 포함 - 도주관으로 실시한 마을 주민교육 추진실적, 지자체에서 '03년에 자체적으로 조성한 농촌관광 마을수 ('04년 농림업무평가 실시계획에 포함) 	○ 지자체의 사업 추진 관심제고
마을심사평가기준 ① 관광자원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농촌모습의 보전, 경관주택의 보유 여부 ○ 자연경관의 조성 현황 및 보전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문화유적 보유현황 및 연간 방문객수, 레저시설 연간 이용객수 현황) ○ 지역고유축제, 지역 특산물, 향토음식 등 보유여부 - 교통편의 다양화 여부 - 연간 관광객수 및 민박 관련 숙박시설 수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유도 ○ 상 동 ○ 참조사항예시 ○ 지역 특성의 적극적인 발굴 유도 ○ 참조사항예시
	(신 설)		
	(신 설)		
② 주민합의와 사업 추진의지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토지이용 조감도 작성·제출 여부 	○ 주민 참여에 의한 계획적 토지이용유도
	(신 설)		
③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도 ○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점부여(30점범위내)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통해 검증 ② 계산식 도입(사업 지침에 상세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의 관심 제고 ○ 친환경농업 실천, 다수 마을 협정 참여 유도
II. 녹색농촌체험지원 체계구축사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내용삽입(별첨) 	○ 포털사이트 홍보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49. 한계농지정비사업 5.2004년도사업시행요령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고시></p>	<p>가. 한계농지정비지구지정 요건 ○ 토지중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함. ○ 다만,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시설의 경우 농지의 최소정비규모는 3천 제곱미터로 하고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p>	<p>가. 한계농지정비지구지정 요건 ○ 토지중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함. <삭 제></p>	<p>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함</p>
<p>50. 농가경영안정지원 ②농업인경영회생지원 ○ 대상사업 ○ 대 상 자 ○ 대상자격</p>	<p>'03년 시범사업 추진 전업농규모 이상 ○ 신청일 현재 1년전부터 향후 1년 이내 상환(된) 원리금(연체대출금 포함) ○ 시설 또는 품목(가축) 피해복구자금 ○ 1년 이내 신규운영자금</p>	<p>○ 부채문제 사회화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상설화 지원 ○ 전업농규모의 2/3 이상 경영체 또는 농업용 부채 5,000만원 이상 농가 ○ 신청일 현재 2년전부터 향후 2년 이내 상환(된) 원리금(연체대출금 포함) ○ 좌 동 ○ 좌 동 ○ 경제사업 채무중 상환 도래되어 연체한 자금 (사료대 등) - 우선 협동조합경제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추후 일반업체 등 채무검토 ○ 대위변제할(한) 자금 - 다만, 대출이 아닌 현금 또는 예금으로 기변제한 경우 제외 ○ 타은행(일반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및 보험 회사 등에서 차용한 농업용 자금 ○ 다만, 연체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농업용 자금지원 검토(최소금액)</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 지원금리 ○ 지원기간 ○ 지원규모</p> <p>51.농공단지육성</p> <p>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추진체계></p>	<p>4%</p> <p>3년거치 5년상환</p> <p>500억원</p> <p>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대상지구선정 (나)농공단지 입지제한기준 ○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 단,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논은 60%까지 허용</p>	<p>3%</p> <p>3년거치 7년상환</p> <p>2,000억원</p> <p>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대상지구선정 (나) 좌동 ○ 좌동</p> <p><단서조항삭제></p>	<p>-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삭제</p> <p>"</p>
<p>52.농어촌생활환경 정비</p> <p>①정주권개발</p> <p>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p>	<p>가. 대상사업 선정 (신 설)</p> <p>나. 사업시행계획수립 - 시장·군·구청장은 예산에 맞추어 매년 최소한의 사업만 시행하여 당해년도 완공 또는 효과거양을 위주로 추진하고 부분 구간 도로공사나 보수 형태의 공사 등은 지양함</p> <p>바. 사업시행 (3) 실시계획변경 (신 설)</p>	<p>가. 대상사업 선정 - 광역시 자치구중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조정으로 준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삭제하고 타지역으로 조정·시행</p> <p>나. 사업시행계획수립 - 시장·군·구청장은 '04년도 예산에 맞추어 최소한의 사업만 선정하여 당년 완공 위주로 추진하고 부분 구간 도로공사나 보수 형태의 공사 등은 지양함 특히 '04년도에 완공할 수 없는 공사의 조사·측량·설계는 하지 않음</p> <p>바. 사업시행 (3) 실시계획변경 -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10%이상 추가되는 단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한다.</p>	<p>- 사업 대상범위를 명확히 함</p> <p>- 지구수정 및 향후 예산지원제도에 대비하여 단서조항 신설</p> <p>-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방안지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함</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②문화마을조성</p> <p>53.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p> <p>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p> <p>56. 사유림협업경영</p> <p>○지도원 인건비</p> <p>○우수협업체지원</p> <p>- 협업체운영비</p> <p>- 기자재및장비</p> <p>- 산림사업비</p> <p>○공동소득원사업</p> <p>57. 임도·사방사업</p> <p>① 임도시설</p> <p>○국고보조지원 기준</p>	<p>사. 사업비 지원</p> <p>○농어촌지역별단지조성비</p> <p>- 대기업 : 3~7만원/평</p> <p>- 중소기업 : 3~10만원/평</p> <p>□ 문화마을조성사업과 마을하수처리설치사업 시행지침 별도 작성</p> <p>□ 사업비 지원</p> <p>○마을하수처리시설 : 농특회계 보조 지원</p> <p><사업개요></p> <p>가. 사업내용설명</p> <p>(1) 지원조건</p> <p>- 재원</p> <p>국고(농특세) 50%</p> <p>지방교부금 50%</p> <p>○85명 (국고80%,자부담20%)</p> <p>(신 설)</p> <p>○국고 100%</p> <p>(신 설)</p> <p>○자부담 30%</p> <p>○자치단체 자본보조 국고30, 지방비30, 자부담40%</p> <p>○국고지방비(교부금):자부담 50% : 40% : 10%</p>	<p>사. 사업비 지원</p> <p>○농어촌지역별단지조성비</p> <p>-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일 3~10만원/평</p> <p>□ 문화마을조성사업과 마을하수처리설치사업 시행지침 통합 작성</p> <p>□ 사업비 지원</p> <p>○마을하수처리시설 : 지방양여금 보조 지원</p> <p><사업개요></p> <p>가. 사업내용설명</p> <p>(1) 지원조건</p> <p>- 재원</p> <p>국고(농특세) 80%</p> <p>지방비 20%</p> <p><삭 제></p> <p>○50개 협업체</p> <p>○20개 협업체</p> <p><삭 제></p> <p><삭 제></p> <p>○국고:지방비:자부담 80% : 10% : 10%</p>	<p>- 농공단지개발 및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개정 으로 인함</p> <p>마을하수처리시설은 문화마을의 부대시설이므로 '04년부터 종전 농특회계 국고지원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재원과 동일한 지방양여금으로 재원 변경</p> <p>-지원조건 변경</p> <p>○임업기술지도 원인건비와 통합</p> <p>○우수협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p> <p>○우수협업체 지원</p> <p>○우수협업체 지원</p> <p>○사업일시중단</p> <p>○행자부 지원 교부금을 없애고 이를 소관부처의 국고와 지방비로 전환</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58. 임산소득증대 ① 단기임산물생산기반</p> <p>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생산자금 지원 ○ 야생화·산채류 등 단기 임산물 생산지원 ○ 밤나무토양개량용 퇴비 발효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 우선순위 ○ 밤작업로 시설 ○ 밤생산기반지원 보조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작업로시설 - 노령목 관리 - 묘목대 지원 ○ 임업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 우선순위 ○ 표고재배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용자:지방비:자부담 - 30 : 30 : 30 : 10% ○ 국고:지방비:자부담 - 30 : 30 : 40% ○ 국고:지방비:자부담 - 30 : 30 : 40%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 <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밤주산단지 밤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 가능 ○ 국고:용자:지방비:자부담 - 20 : 20 : 20 : 40% ○ 국고:지방비:자부담 - 20 : 20 : 60% ○ 국고:지방비:자부담 - 20 : 20 : 60% - 개별임가 및 법인경영체, 임산물가공업체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 기록 경영체 등 ○ 표고재배단지시설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소득종합 자금으로 변경 지원(순용자금) ○ 신규사업반영 ○ 지원범위확대 ○ 보조사업통합 ○ 보조사업통합 ○ 보조사업통합 ○ 신규사업반영 ○ 사업비의 탄력적 집행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②조경수·분재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수·분재생산지원 ○ 관상수·토양개량, 토양개량살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 우선순위 ○ 사업간 사업조정 	<p>(신 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수 및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 자기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자 ○ 사업간 20%범위내에서 보조율·단비를 준수하여 사업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소득종합자금으로 변경 지원(순용자금) ○ 신규사업반영 ○ 보조사업 통합
<p>③산림복합경영</p>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모델유형 및 지원 기준 명시 ○ 기존 지원사업지의 보완 사업 지원 가능 (50백만원 범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지원 기준 명시 ○ 지원범위확대
<p>④산림종합자금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 추진체계 - 사업내용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소득종합자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융자금 통합 - 금융기관의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법인 경영체 - 자금지원 결정 등 추진체계 추가 · 산림조합에서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 - 시설장비자금 및 운영자금의 품목별 사업내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반영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61. 임산물유통개선지원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농림사업물류센터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삭 제> <삭 제>	○ 사업종료 ○ 목재유통지원 으로 별도분류 ○ 신규사업반영
○ 조경수유통단지조성 - 신청자격 - 추진체계 - 사업내용	(신 설)	- 한국조경수 협회 - 유통단지조성 추진체계 추가(주관:한국조경수협회) - 사업내용 추가	
○ 임업후계자직판장 지원 - 신청자격 - 추진체계 - 사업내용	(신 설)	- 한국임업후계자 협회 - 직판장지원 추진체계 추가(주관:임업후계자협회) - 사업내용 추가	○ 신규사업반영
○ 밤전문조합 지원 - 신청자격 - 추진체계 - 사업내용	(신 설)	- 공주밤 산림조합 - 밤전문조합지원 추진체계 추가(주관:충남도 공주시) - 사업내용 추가	○ 신규사업반영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 우선순위		-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품목 우선지원	○ 품질향상유도
67. 산림자원조성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 민유림 조림 - 사업비보조율	(신 설)	○ 금강소나무림 육성 - 국비: 70%, 지방비 30%	○ 향토자생수종인 금강소나무림을 보존육성하여 임업경쟁력 제고
	(신 설)	○ 아름다운마을숲 조성 - 국비: 50%, 지방비 50%	○ 농산촌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민유림 육림 - 자부담을 인하	○ 숲가꾸기 사업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숲가꾸기 사업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숲가꾸기 공익 성을 감안하여 산주 부담을 경 감하여 자발적 참여유도와 원활한 사업 수행 도모

Ⅵ. 기타 주요사항

여 백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概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500만원

- 보증부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5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3) 담보대출

○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대출가능금액
○ 부동산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선순위권리
- 아파트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 연립단독주택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감정평가액의 40%이내에서 "
- 기타부동산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
○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 예입액의 90%이내
○ 공제증권	○ 해지환급금의 90%이내
○ 신용보증서	○ 보증금액의 100%이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 보증기금의 100%이내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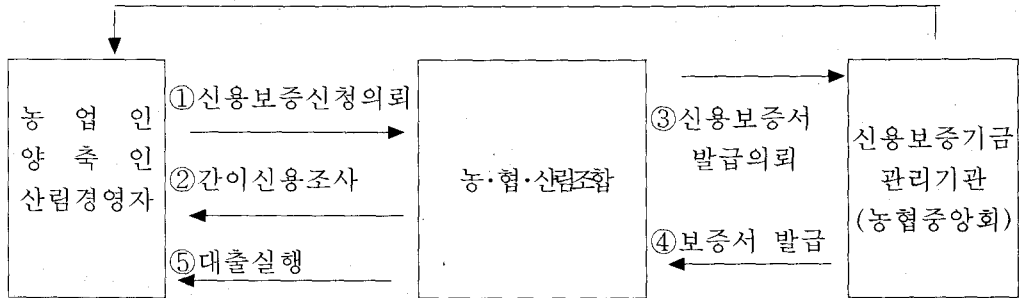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정식 신용조사 및 심사



○ 보증한도(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개인 : 신용보증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누계액 15억원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5,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5)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담보등급	대상 담보물 종류	대출비율
갑 류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 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투자금액의 71 ~ 80%
을 류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등 창고류	○ 투자금액의 51 ~ 70%
병 류	○ 유리온실, 철골Pet온실 등 온실류 ○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기계·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	○ 투자금액의 41 ~ 50%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농업인		개인사업자		법인		비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교부서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확인서류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 사업계획서 ○ 월별공정계획표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개별지가확인원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 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 일당
 - (1)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 (2) 4시간 초과 : 100,0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2천만원 이하	면제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0,000원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3 % - 0.6 %

- 법인 : 연율 0.5 % - 1.0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2. 고품질 쌀 관련 정의

※ 고품질 쌀과 관련된 해석기관은 농산경영과입니다

추후계재(시달)

추후개재(시달)